

신기술기반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연구

성승제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보고 2015-05

신기술기반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연구

성 승 제

신기술기반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연구

Legislation Research for New
Technology-based secure electronic
financial stability

연구자 : 성승제(연구위원)
Seong, Seoung-Je

2015. 10. 31.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갖추고 전자금융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전자금융 관련 법제도의 기본 원칙이라 할 것이다.
- 현실은 이와 달라서 한국의 개인정보유출은 심각한 정도에 다다라서, 안전성을 지키지 못한 결과 전자금융업 발전에도 장애가 초래되었거나 초래될 수도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 관련 법제도들이 전자금융거래법 본연의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시도하려고 함

□ 연구의 목적

- 적지 않은 개인정보유출사고에도 불구하고 기업 책임을 묻는데 소홀히 하는 현상을 파악하여야 함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전자금융거래법의 또다른 목적인 전자금융업의 발전도 얻기 쉽지 않음
- 그것은 한 때 IT기반이 잘 발달했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최근 소위 핀테크 등 신종 전자금융거래의 발전에서는 그다지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주고 있음.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핀테크 발전을 위한 무규제 원칙 등 규제철폐 정책을 도입하는데도, 장애가 되고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 관련 법제도를 일견하여 분석 및 검토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상 목적이 잘 성취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함

II. 주요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분석 및 검토
- 전자금융과 본인 인증방법 그리고 신종 인증수단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 전자금융거래 동향에 대하여 핀테크 정책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하여 현황을 소개하고 검토함
- 국경간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이 전자금융거래 법제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분석함
- 이용자 중과실의 범위 등 전자금융거래법의 쟁점 검토 및 분석

III.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상 개인정보보호가 산업 육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경우에 기초자료 제공

전자금융업종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기초자료 제공

▶ 주제어 : 전자금융, 전자금융거래, 전자금융거래법, 금융보안, 핀테크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Background of Study

-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plans to develop electronic financial industry with stability and this is the main principle of legislation pertaining to electronic financial system.
- However,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has reached a critical level and stability problem may be an obstacle against development of the electronic financial industry.
- By amendment and improvem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and other related law can fulfill the main purpose and function well.

Purpose of Study

- To grasp the current situation that companies do not hold responsibilities despite the frequent cases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 If stability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is not secured, it is hard to expect development of electronic financial industry which is the other purpose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 It demonstrates Koera, which was once considered as a country with the most developed IT infrastructure, is recently inactive in the field of new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such as Fintech. The fact that stability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is not secured is one of obstacles against adoption of deregulation policies such as deregulation policy for Fintech.
- By reviewing and examining the law system pertaining to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we can find the solution to fulfillment of the purpose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II. Main Summary

- Analysis and review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 Legislative review on electronic finance, methods for personal certification and new methods for certification
- Introduction and analysis of Fintech's policy against the trend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Analysis of influence of frequent cross-border transactions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 Analysis of issues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such as scope of users' gross negligence

III. Expected Outcomes

- Provision of basic data prov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y legislation is important for industry promotion
- Provision of basic data for further amendment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 Provision of basic legal data for fundamental development of the electronic financial industry

➤ Key Words : electronic financ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financial security, Fintech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5
제 1 절 연구의 목적	15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 2 장 전자금융거래법과 안전성	21
제 1 절 전자금융거래 의의	21
1. 금융의 의의	21
2. 금융거래	22
3. 전자금융거래	25
제 2 절 전자금융거래법 분석 및 검토	30
1. 전자금융거래법 목적·개념·적용범위	30
2.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36
3. 전자금융업 감독 및 행정절차	44
제 3 절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 안전성	45
1.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45
2. 전자금융거래와 금융보안	47
3. 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	50

제 3 장 전자금융거래 동향: 핀테크 정책과 정보보호	55
제 1 절 핀테크 관련 금융당국의 정책	55
1. ‘IT·금융 융합방안’ 발표	55
2. 금융보안원의 설립	59
제 2 절 핀테크와 정보보호	62
1. 비금융회사의 책임부담	63
2. 보안성심의 제도의 폐지	65
3.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제도 폐지	67
4.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 개선	69
5.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	70
6.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	70
7.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보보호 및 금융보안 입법 구체화	71
제 3 절 핀테크와 금융	72
1. 의 의	72
2. 인터넷 전문은행	74
제 4 장 전자금융과 본인 인증방법	87
제 1 절 전자금융 본인 인증방법 연혁	87
1. 인터넷뱅킹 인증방법 변화	87
2. 외국의 본인인증방법	92
3. 온라인 신용카드 사용 관련	96
제 2 절 본인인증방법·책임 관련 법률조항	98
1. 전자금융거래법	98
2. 여신전문금융업법	102

제 3 절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 개념 및 분류	105
1. 전자금융거래 인증	105
2. 인증수단 분류	106
3. 인증수단과 접근매체	109
제 5 장 전자금융거래와 국경간거래	113
제 1 절 한국과 FTA	113
제 2 절 FTA와 금융서비스	120
1. 개방방식과 GATS의 서비스 공급유형	120
2.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	120
제 3 절 FTA와 전자금융법제	121
1. 문제의 소재	121
2. 전자금융서비스 법제 개선	122
3. 한미 FTA 쟁점	123
제 6 장 금융보안 정책방향	131
I. 전자금융거래법과 안전성 제고방향	131
II. 인증방법 검증에 대한 기술중립성 제고	133
III. 전자금융 안전성과 전자금융업 육성	134
IV. 금융보안 법제도 검토	135
참 고 문 헌	13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IT 혁명이 진전되면서 그 동안 한국에서 무심하였던 개인정보 문제가 심각하게 되짚어보아야 할 일로 떠오른지 오래이다. IT 혁명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대량의 개인정보가 간단한 기기 조작만으로도 오고갈 수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래 금융회사 및 대기업들에 의한 개인정보유출사고들은 바로 그런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최초의 문제의 연원은 주민등록제도로 귀착된다고 볼 수도 있다. 1962년 5월 10일 제정되고 같은 해 6월 20일 시행된 주민등록법은 우리 사회에 적어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바지 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는 근대화에 어느 정도 초석이 되었던 것인데, 규격화, 단순화, 표준화는 근대화의 3대 표현현상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주지하다시피 이 제도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에서는 큰 약점이 되고 있기도 하다.¹⁾ 뒤늦게 2014년 8월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다.

주민등록 제도와 아울러 한국의 지나친 효율성 추구하고 그것을 위한 획일성은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한국의 무수한 개인정보유출사고들을 보건대, 이것이 오늘날 IT 시대에 성숙한 성장을 가로막는 암초가 될 수도 있다. IT화가 진전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중앙집중적 관리체계는 금융 편리성 제고를 위한 전자금융 문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1) 주민등록제도는 1968년 1.21 사태를 계기로 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가 신문에 보도되는 등 종전의 시민증·도민증을 대체하여 확고히 자리잡게 된다.

IT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 및 급증하고 있어서, 최근 몇 년간 금융회사와 대형 오픈 마켓, 통신사 등에서의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정보보호 및 보안체계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었고, 특히 1억여건의 신용카드사 정보유출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하여, 지난해부터 각종 정보 관련 법률안들이 정보보호를 엄격히 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되고 있다.²⁾ 그러면서도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개정전 법률보다 금융소비자를 잘 보호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각종 관련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처리되거나 처리 중에 있고, 정부부처에서도 TF를 구성하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결과물을 쏟아내고 있다.³⁾ 어느 하나의 논자에 의하여 완벽한 개인정보보호를 달성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제도 본래의 목적에 따른 안전성을 구현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속적인 문제의식 보유와 법적 분석과 현실적 적용이 계속되면서 계속 법상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안전성이 제고되기를 바랄 수는 있을 것이다.

일명 ‘천송이 코트’로 부각된 간편결제시스템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정부부처의 노력이 병행되면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IT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게 되는 등, 결제과정에 참여하고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다루거나 보유할 수 있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이를 위하여 기존의 사전적이고 세세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⁴⁾ 본래 무규제 원칙이라 알려진 이러한 것들은, 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2) 최지현, 『핀테크와 정보보호』, 동 과제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전자금융거래법과 보안』, 2015.4.13., 9쪽.

3) 최지현 및 자료집 9쪽.

4) 최지현 및 자료집 9쪽.

법률』이 제정·시행되기 이전, 즉 구 증권거래법 적용되던 당시까지 positive 규제 방식을 취함으로써 폭이 좁게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던 한국의 금융감독방식에서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negative 방식을 취하는 즉 법령상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형태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은 핀테크 등이 본질적으로 종래 존재하지 않던 신금융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근 ‘핀테크’가 금융산업 중 핵심 화두로 등장하였다. 정부나 학회 등 모든 유관 단체들이 논의에 열중하고 있다.

핀테크는 모두들의 삶에서도 적지 않게 중요한 거래 방법으로도 쓰여지고 있다.

IT 기반이 우수한 줄로만 생각하던 한국이 핀테크 등 신금융서비스업에서는 그 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즉 위에 열거한 새로운 수단이라 함은 사실 외국에서는 그다지 새롭지 않게 취급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자금융업 육성을 위한 또다른 전자금융거래법의 목적도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핀테크라는 새로운 금융수단을 총칭하는 신 전자금융업종들이 우리에게 주는 편의성 이면에 감추어진 위험성이다. 이미 한국의 금융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송금·이체 등 각 부문에서 상당한 편리성을 제공한 바 있다. 실은 그로 말미암아 공인인증서 등 종래 제도들이 기술적으로는 사실상 완벽함에도, 전자금융거래의 위험을 유발하기도 한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익스플로러의 획일적 사용과 소위 액티브X로 불리우는 기술적 사용이 사용자로 하여금 단순히 엔터키를 자동으로 치게 만들면서 위험을 방조했다는 한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이 점 핀테크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로 많은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진다면 과거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동시에, 금융거래의 보안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의 주 관심사 중 하나는 핀테크와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요구되는 안전성 확보에 대한 논의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정부가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지나친 개인정보 규제 때문에 핀테크가 더욱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기도 하지만, 사후적 책임이 국제적으로 볼 때 엄격하다는 점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운 핀테크를 시도하기 어려워져 금융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핀테크는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⁵⁾ 이러한 주장은 금융규제완화라는 세계적인 경향 속에서 금융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금융규제시스템과 결부되어 있다. 정부 정책은 금융규제를 완화하려는 흐름 속에서도, 선불리 금융규제를 완화하다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주저하는 점도 있다. 금융규제 완화는 어디까지 진전시켜야 할지 범위를 잡기 쉽지 않다. 기업들은 쉽게 불편을 호소한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경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기업일지라도 존폐의 위기에 몰릴 정도로 벌칙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에 반하여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유출사고 등이 발생할지라도 책임지는 기업 등이 없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국은 전술한 주민등록제도 등이 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개인들로서는 변경이 매우 힘들고 일괄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5) 문병순, 『핀테크의 동향과 과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금융과 IT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자료집, 2015.3.27., 52~53쪽.

외국의 개인정보유출사고보다 심각한 문제를 잉태한다. 책임지는 기업들이 없다는 점은, 한국에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대량으로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라 할 것이다. 기업 중심사회⁶⁾는 기업의 이익이 주로 주장되지만 정작 기업들도 먹고 살 터전이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대량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또 회피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결과 전자금융산업의 발전도 위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규제 완화보다는 안전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전개한다. 주로 전자금융거래법의 해석과 관련된 전자금융법제도에 대한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6) 한국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2009~2013년 평균 25.19%로서 OECD 1위이다. 2000년 이후, 타 회원국은 별 변동 없었음에도, 한국은 이 비율이 계속 증가/상향되었다 한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5/10/05/story_n_8242158.html(최종방문 2015.10.27.)

필자가 추정컨대 이 기업소득 증가와 아울러 주로 대기업으로 경제력집중이 가속화되는 현상도 병행되었을 것으로 본다.

제 2 장 전자금융거래법과 안전성

제 1 절 전자금융거래 의의

1. 금융의 의의

금융의 의의에 대하여 본다.

첫 번째는 금융이란 이자를 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즉 일정 기간을 정하고 앞으로 있을 원금의 상환과 이자변제에 대하여 상대방을 신용하여 자금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⁷⁾ 이것이 정확한 표현일지는 잘 모르겠다. 이자율이 점점 낮아지면 은행예금의 경우 負(-)의 이자도 있을 수 있는 때문이다. 물론 앞선 정의개념도 負(-)의 이자를 받고 융통해주는 것 까지 포함하는 의미일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융통이란 유무상통한다는 의미인데, 현대의 경제는 화폐의 순환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서, 자금의 유통 즉 금융이 행하여지게 되면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인 바, 금융은 자금이 여유가 있는 자와 자금이 부족한 자가 이러한 채권·채무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⁸⁾ 이 또한 모든 모습을 가리킨다고 할 수 없다. 한 부분에서 주고 받는 것만을 정의한 것일 수는 있지만, 금융이란 사회 전체적인 방대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자금의 유통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세 번째는 금융은 자금 여유가 있는 경제단위가 자금이 부족한 경제 단위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을 말하며 화폐가 수행하지 못하는 서로 다른 시점 간의 교환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미래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받기 위한 약정과 화폐의 교환매개기능을 일시적으로 교환하는 활동이라고도 한다.⁹⁾

7) 네이버 검색에 의한, 경제학사전(최종방문 2015.6.24.)

8) 네이버 검색에 의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최종방문 2015.6.24.)

9) 주상룡/정문경, 『금융학원론』, 신론사, 2015.2., 31~32쪽.

위 세가지 정의 모두 법적인 정의인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금융에 대한 정의이다. 서술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요컨대 금융이란 현대 화폐경제 하에서 물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넘치는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화폐 또는 통화가 이전되어 가며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금융이라 할 수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금융에 대한 정의의 중점은, 유통에 있다. 유통이란 금전 또는 물품 따위를 돌려쓰는 것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된다. 유통의 주체는 동일주체 내에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금융에서 말하는 유통이란 서로 다른 주체 사이에서 유통하는 것만을 가리킨다. 이는 차주가 대주의 것을 이용한 뒤 반환하는 일체의 유형을 가리키는 민법상 대차에 해당한다. 동종·동질·동량의 것을 반환하는 소비대차(민법 598~608조)와 차용한 물품 자체를 반환하는 사용대차(민법 609~617조), 임대차(민법 618~654조) 모두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교환가치에 핵심이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종래 근대법 체계에서 관찰의 중점은 개인 대 개인의 거래에 놓여 있다. 그런데 금융이란 사회전체적인 측면을 고찰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금융은 신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현대 화폐 경제는 신용에 의하여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 법적 고찰은 이 모두를 정의하기는 아직 부족하다. 이 보고서의 핵심이, 금융에 대한 정의와 고찰인 것은 아니므로 여기까지만 검토한다.

2. 금융거래

화폐 또는 통화를 필요로 하는 자가 그것에 여유를 갖는 자로부터 자금의 유통을 받는 거래를 뭉뚱그려 금융거래라 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직간접적 금융거래로 구분하는 견해를 소개한다.

직접적 금융거래는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자금잉여자인 가게 등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융통받거나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여 이와 교환으로 자금잉여자로부터 자금의 제공을 받는 것이 해당할 것이며, 반면 간접적 금융거래는 금융회사¹⁰⁾의 중개를 거쳐 융통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가령 은행이 예금의 형태로 가게의 저축을 흡수하고 그 자금을 대출에 의해 기업에 제공하는 형태가 있다.¹¹⁾

실정법상 금융거래에 대한 정의 유형은 다양하다.

먼저 상법 제46조는 기본적상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다양한 금융거래를 포함하고 있다.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제46조 제8호)와 더불어,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제46조 제16호), 보험(제46조 제17호)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제46조 제19호),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제46조 제21호),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제46조 제22호)는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전제한 상법상 기본적상행위 규정들이라 할 것이다.

10) 이 보고서는 금융기관 대신 금융회사라 적는다. 금융기관 표현은 과거 거의 모든 금융회사들이 정부가 지배적 지분을 가졌던 소위 관치금융 시대의 유물이라 본다. 금융기관은 부지불식간에, 마치 금융회사들이 영리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좇는 공공기관인 것 같은 착오를 줄 수 있기에 회피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영어로는 'financial institutions'라 하는데, institution은 (영리)상사회사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기관'이란 단어는 영리회사의 의미는 없다.

이 표현의 차이는 중대하다. 관치금융의 관행으로 순치되어 온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별로 보여준 적이 없지만, 초기자본주의 고리대금업으로부터 시작된 금융회사들의 악행은, 대부분 선진국들은 잘 인식하고 있다. 휴일도 쉬지 않는 이자의 위력은 산업자본들로 하여금 언젠가 반드시 금융자본보다 열위에 처하게 한다. 금융회사의 위력과 혹 그 악행을 불러올 구조를 낳을 위험을 심사숙고할 당위성은 크다. 아무튼 적어도 금융회사의 영리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도 '금융회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11)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07.3., 4쪽. 다만 이 책은 은행의 간접금융을 지배적인 자금조달방식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자본시장이 극히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 나라도 있고, 시대의 추이에 따라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역시 해당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상법 제46조의 행위들 즉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제46조 제1호),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제46조 제2호),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제46조 제3호),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제46조 제4호),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제46조 제5호), 출판·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제46조 제6호),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제46조 제7호),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제46조 제9호), 상행위의 대리인 인수(제46조 제10호), 중개에 관한 행위(제46조 제11호),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제46조 제12호), 운송의 인수(제46조 제13호), 임치의 인수(제46조 제14호), 신탁의 인수(제46조 제15호),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제46조 제18호) 등 나머지 기본적인 상행위들도 금융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 대부분이거나 상당부분에 해당할 것이다. 물론 화폐 또는 통화가 유통되는 것 전부가 금융인 것은 아닐 수 있다. 즉 기본적인 상행위 중 매매 등의 경우 금융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화폐 또는 통화를 대가로서 직접 지급함으로써 자금의 유통 내지 금융이랄 것이 없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오늘날 신용사회에서 실제 거래액수와 거래건수 대부분이 금융거래로서 처리되어질 것이 예상된다.

다음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이 있다.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금융거래라고 한다(금융실명법 제2조 제3호). 그러나 총리령은 이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밖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을 규율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은 금융투자업 전반을 규율한다(자본시장법 제1조). 기타 수많은 법령들이 금융거래를 규율하고 있다.

전술한 상법 제46조 제19호의 행위(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업 등은 소위 물용으로 금융과 대조적인 것으로 묶을 수 있지만¹²⁾, 필자는 물용도 금융의 해석/적용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보아 금융과 같이 기술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

(1) 의의/연혁

인류는 문명의 발전에 따라 금융거래를 꾸준히 확대하여 왔다. 대륙법 계통의 국가들의 경우 은행과 개인의 접촉으로 축적된 자본을 각각 화폐 및 통화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간접적인 금융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확대가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유럽을 거쳐서 성장한 증권시장은 특히 미국의 자본주의 성장기에는 증권시장의 발달이 현저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도 금융거래의 확대에 엄청난 포션을 차지하게 되었다.

중세 도시화의 진행이나 교역의 활성화에 따라 나타난 유가증권은 금융거래의 확대에 큰 기여를 하였던 바, 시간과 공간과 위험이라는 장벽을 회피하고자 만들어진 법 기술적 제도로서 금융거래의 확대에 큰 기여를 하였다.

금융에서 파생된 유가증권은 자금의 유통을 넘어 금융상품 거래시장을 형성하고 금융상품의 거래가 금융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유가증권도 권리의 유통을 위하여 증서의 교부가 필수적이어서 권리의 신속한 이전에 장애가 되기 시작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의

12)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2판)』, 2008.3., 7쪽.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방식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¹³⁾ 전자기술의 도입은 2가지 방식 즉 하나는 권리를 전자문서로 표창하고 이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권리를 등록하는 전자등록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권리가 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¹⁴⁾

(2) 개념

전자금융은 최근에도 발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전자금융 분야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非대면으로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⁵⁾ 전자금융이 비대면을 무조건적인 요소로 한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는 거래라면 실질적으로 얼굴을 맞대 필요 없이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금융회사의 점포를 방문하여 얼굴을 맞대고 거래를 하더라도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거래를 성사시킨다면 그것은 전자금융의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한국은행은, 전자금융이란 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가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금융업무와 관련한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금융상품의 판매, 금융서비스 채널의 제공, 지급결제 등 금융업무 및 관련 부수 업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었다.¹⁶⁾

지금은 전자금융을, 금융 업무에 IT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화, 전산화를 구현한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한다.¹⁷⁾ 정의 개념이 해에 따라

13) 정경영 윗 책 6쪽.

14) 정경영 윗 책 6~7쪽.

15) 문준조, 『FTA의 체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10.29., 17쪽. 같은 쪽에서 전자적 수단이라 함은 인터넷 또는 전용선 등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 등을 의미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 데이터통신에 이용되는 이동통신기기, ARS에 연결된 전화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

16) 한국은행, 『전자금융총람』, 2009.5(이하 ‘2009년 전자금융총람’이라 인용함), 3쪽.

17) 한국은행, 『전자금융총람』, 2015.2(이하 ‘2015년 전자금융총람’이라 인용함), 3쪽.

변동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양자 모두 법적인 검토는 아니라 할 것이다. 2009년 정의보다 2015년 정의가 간단명료하게는 되었지만, 양자 모두 법적인 개념상 전자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아니할 내부사무처리까지 전자금융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초창기 전자금융의 의의가 금융회사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입출금, 송금 등 기본적인 금융서비스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다양한 공동망 구축을 통하여 금융회사 간 거래의 투명성,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 금융회사 직원의 개입 없이¹⁸⁾ 계좌 간, 금융회사 간 거래가 자동화되었으며,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실시간 거래도 가능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은행들은 온라인 banking, 지로 등 고객 대상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⁹⁾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은, 전자금융(electronic banking)을 전자적 방식(electronic channel)을 통해 금융상품banking products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예금, 대출, 계좌 관리, 금융자문의 제공, 전자지급서비스(electronic bill payment)와 그 밖의 전자화폐와 같은 전자지급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한다.²⁰⁾ 국제결제은행의 정의는 내부업무처리와 비대면에 의한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를 구별하여 후자만을 특정하고 있는 개념인 것은 아니다. 국제결제은행의 구분 또한 실질적인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것을 통칭하고 있다.

미국 연방금융회사검사위원회(FFIEC: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는 e-banking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전자금융(e-banking)은

18) ‘개입을 줄이고’ 로 바꾸어야 할 듯함.

19) 위 2015년 전자금융총람 3쪽.

20) “Electronic banking refers to the provision of retail and small value banking products and services through electronic channels. Such products and services can include deposit-taking, lending, account management, the provision of financial advice, electronic bill payment, and the provision of other electronic payment products and services such as electronic money.”
Risk Management for Electronic Banking and Electronic Money Activities, 1998.3., BIS, p 3.

전통적인 그리고 새로운 유형을 포함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전자적이고 상호적인 communicatoin 방식을 통하여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을 가리킨다. 금융회사, 고객, 개인 또는 사업자들이 계정과 거래 또는 인터넷과 공공의 또는 사적 network를 통하여 성사시키는 시스템까지 포함한다.²¹⁾ 동 검사위원회의 전자금융 정의도 역시 내부업무처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후술 법적 개념상 비대면에 의한 전자적 수단을 통한 거래라는 것만을 독립시켜 특정하고 있지 않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전자금융업무)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전자금융거래라고 정의한다(전자금융거래 제2조 제1호).

학술 해석을 살펴본다.

첫째 견해는 전자금융이 금융거래의 처리가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들 모두를 전자금융거래라 하고, 금융회사들이 IT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업무와 관련한 내부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등 금융회사들의 내부적 업무까지 전자금융에 포함하는 것을 ‘광의의 전자금융거래’라 명명하고, 금융거래의 이용자가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를 의뢰하고 금융회사가 전자적 방식으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을 ‘협의의 전자금융거래’라 칭하는 견해가 있다.²²⁾ 동 견해는 전자금융거래법이 협의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하여서만 전자금융거래라고 파악하며, 이는 이용자가 전자적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21) “...e-banking is defined as the automated delivery of new and traditional banking products and services directly to customers through electronic, interactive communication channels. E-banking includes the systems that enable financial institution customers, individuals or businesses, to access accounts, transact business, or obtain information on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through a public or private network, including the Internet.” E-Banking EB(IT Examination HandBook), 2003.8., FFIEC, p 1.

22) 정경영 앞 책 10~11쪽.

의뢰(또는 실행)할 경우에 비로소 전자금융거래의 특징이라 할 비대면 거래의 속성이 나타나고 당사자 확인 내지 보안문제 등 특별한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 특성이 나타난다는 근거를 제시한다.²³⁾

둘째 견해이다. 전자금융거래를 역시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며 광의의 전자금융거래를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전자지급거래, 전자증권거래, 전자보험거래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금융거래를 예시함)를 말하고, 협의의 전자금융거래는 『전자지급수단에 의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거래』(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지급, 선불전자지급, 모바일지급 등 예시함)라고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²⁴⁾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은 광의의 전자금융거래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

그 밖에 정리하자면

위 둘째 견해가 광의의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법의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위 둘째 견해에서 광의의 전자금융거래라고 표현한 것은 전자의 견해에서 협의의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하여 전자금융거래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까지 만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을 크게 나누어 본다면 기관 및 단체의 견해는 전자금융거래의 범위를 당사자 간 법률행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내부 업무처리에 까지 확대하고 있고, 반대로 전자금융거래의 범위에 대한 법적 견해는 비대면의 특징을 갖고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처리되는 금융거래에 한정하고 있다. 필자도 전자금융거래의 범위에 대하여 비대면의 특징을 갖고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금융거래로 한정된다는 견해에 찬성하고 그것을 협의의 전자금융거래라고 부르고, 반면 기관 및 단체가 실무상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에서 금융회사들의 내부 업무처리를

23) 정경영 앞 책 11쪽.

24) 손진화 앞 책 7쪽.

전자금융거래로 포함시키는 것은 광의의 전자금융거래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제 2 절 전자금융거래법 분석 및 검토

1. 전자금융거래법 목적 · 개념 · 적용범위

(1) 전자금융거래법의 목적

법 제1조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주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1 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 법제도의 핵심은 안전성에 있고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타당한 입법 목적이다. 그러면서도 전자금융 관련 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여야 한다. 양립하기 쉽지 않은 입법 목적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전자금융업의 발전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전자금융업의 발전이 달성될 수 있을지를 최종적으로 좌우할 것이라는 점에서 동시에 달성하여야 할 입법목적이다.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전자금융 관련 법제도에 대하여 동 법률 목적은 해석상의 기본 원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견 양립되어 보이는 안전성의 추구하고 전자금융업의 발전은 사실은 수미쌍관되는, 즉 한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앞뒷면의 모습과 같다고 본다.

(2) 전자금융거래법상 개념

법 제2조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실정법상의 다양한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2.3.21., 2012.6.1., 2013.5.22.>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결제중계시스템” - 조문 생략 -

7. “이용자” - 조문 생략 -
8. “전자적 장치” - 조문 생략 -
9. “전자문서” - 조문 생략 -
10. “접근매체” - 조문 생략 -
11. “전자지급수단” - 조문 생략 -
12. “전자자금이체” - 조문 생략 -
13. “직불전자지급수단” - 조문 생략 -
14. “선불전자지급수단” - 조문 생략 -
15. “전자화폐” - 조문 생략 -
16. “전자채권” - 조문 생략 -
17. “거래지시” - 조문 생략 -
18. “오류” - 조문 생략 -
19. “전자지급결제대행” - 조문 생략 -
20. “가맹점” - 조문 생략 -
21. “전자금융기반시설” - 조문 생략 -
22. “전자적 침해행위” - 조문 생략 -

법 제2조 제1호는 비대면으로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라는, 학설상 전술한 전자금융거래의 법적 정의의 요건에 부합한다. 그러나 비대면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일 것은 아니다.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전자적 수단에 의한 금융거래라면 전자금융거래에 포함된다. 다만 대면한 상태에서의 조건이 해당 금융거래에 영향을 끼친다면 전자금융거래라고 하기 곤란하다는 정도의 의미로 새긴다.

제2호의 전자지급거래도 같은 의미의 규정이다.

한편 이상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유형을 본받아 구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가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을 말한다고 전제하면서, 이를 여·수신거래, 유가증권거래, 지급·추심거래, 기타 거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⁵⁾ 이상의 의견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유형을 결국 금융거래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서 다수설에 해당하는 견해라 할 것이다.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속성으로 ‘비대면’을 집어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제정되었다.

제3호의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를 포함한 금융사용자들이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중개하거나 상대방일 경우 어느 정도까지를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로 취급할 것인가를 정의한다.

제4호(제5호)의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보조업자)는 금융회사 이외의 전자금융업에 종사하는 자를 정의한다.

그 이후 제6호~제22호까지는 동법상 사용하는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범위

법 제3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한다.

제 3 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② 제5장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5) 강준모, “전자금융거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21권 2호), 2005.8., 186쪽.

③ 금융회사 중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2.>

1. 제21조 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준수
2. 제21조 제4항의 정보기술부문의 계획수립 및 제출
3. 제21조의2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4. 제21조의3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법 제3조는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법 제3조 제1항 전단). 다만 아래에 상술할 금융회사들에게는 아래 항목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동항 후단). 아래 항목이라 함은

- “제21조 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준수”
- “제21조 제4항의 정보기술부문의 계획수립 및 제출”
- “제21조의2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 “제21조의3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들이다.

아래 상술할 금융회사들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제2조 제3호),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제2조 제4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3조 제2항).

다음으로 제3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2조 제1호의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① 법 제2조 제3호 가목(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제5호, 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령 제5조 제2항 제1호)²⁶⁾

26) 금융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법 제2조 제3호 나목(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동령 동호)²⁷⁾
- ③ 법 제2조 제3호 다목(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동령 동호)²⁸⁾
- ④ 법 제2조 제3호 라목(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
금고중앙회)(동령 동호)²⁹⁾
- ⑤ 법 제2조 제4호(전자금융업자)(동령 제5조 제2항 제2호)
- ⑥ 법 제2조 제5호(전자금융보조업자)(동령 동호)
- ⑦ 법 제2조 제6호(전자금융결제시스템)(동령 동호)
- ⑧ 법 제2조 제14호(선불전자지급수단)(동령 제5조 제2항 제3호)

요컨대 전자금융거래법은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다만 전자
금융거래법은 체신관서와 새마을금고에게는 법 제5장(전자금융업무의
감독)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금융회사라 할지라도 법 제3조 제
3항의 규정은 법 제2조 제1호의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금융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
 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정의)
 제 1 호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
 업금융업을 말한다.
 제15호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문(專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8)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은 체신관서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29) 새마을금고법 역시 구체적 정의는 하고 있지 않다.

회사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 제3조 제3항의 내용은 요약한다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기준이나, IT기술계획수립/제출, 최고정보책임자(CIO), 전자금융취약점 평가 등이다.

결국은 법 제3조 제2항의 내용은 체신관서와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전자금융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책무를 금융위원회가 방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법 제3조 제3항의 내용은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자 위주로 업무를 면제해주는 것인 만큼 굳이 이러한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 의무와 지급효력발생시기 등

제 2 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 1 절 통 칙
제 5 조(전자문서의 사용)
제 6 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 7 조(거래내용의 확인)
제 8 조(오류의 정정 등)
제 9 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제10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제11조(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제 2 절 전자지급거래 등
제12조(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제1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제 2 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14조(거래지시의 철회)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급)
제17조(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제18조(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제20조(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와 동법이 정의한 이용자 사이에 대하여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는 유엔상거래법위원회(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이 1987년 제정한 전자자금이체법지침(Legal Guide on Electronic Fund Transfer)을 기초로 한 1992년 국제신용이체모범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을 근원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은 국제신용이체모범법이 원지시인이 은행에게 지시하여 지정된 금액을 수익자의 처분상태에 두기 위한 처리과정을 규정하는 바, 자금 이체가 지연·오류발생·지급지시에 대한 송신자와 수신은행의 의무·수신은행의 지급시기·송신자 또는 원지시인에 대한 은행의 책임 등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³⁰⁾

국제신용이체모범법은 수익자 은행이 수익자를 위하여 지급지시를 한 때에 완료된다고 함으로써, 인수한 시점에 은행은 원지시인에 대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바,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자금이체 등 전자지급거래 유형별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규정하고 있어서 가령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지급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30) 강진원/이창숙, “전자지급거래에서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효력의 비교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7권 1호), 2007.3., 30쪽.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날 때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과 비교된다.³¹⁾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2장 제2절은 전자지급거래 등(지급, 거래지시, 추심이체)의 효력발생 등에 관한 규율과 전자화폐 및 전자채권 등에 관한 규율을 통하여 어음·수표법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다.

그 중에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상법적 규율에 관한 특별한 수정을 가하고 있는 법, 제13조 제2항은 2014년 9월 30일 개정되어 2014년 10월 15일 공포되었고, 2015년 10월 16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개정취지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실시간 자금 이체시 착오 등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잘못 이체한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전자자금이체의 거래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조치를 금융회사 등이 취하도록 의무화³²⁾”한 것이다. 이에 의하여 동법 제13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

제1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긴다. <개정 2013.5.22., 2014.10.15.>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31) 강진원/이창숙 윗 글 40쪽.

32) 전자금융거래법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가목.

② 총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시행일 : 2015.10.16.] 제13조 제2항

앞서는 UNCITRAL의 국제신용이체모범법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이미 참고한 것이므로 이 대목에서는 미국 통일상법전 규정도 같이 본다.

1989년 미국은 기업간 거액의 전자자금이체에 적용할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제4A편을 제정한 바 있는데, 이는 국제신용이체모범법과 마찬가지로, 원지시인이 수익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목적으로 발생하는 이체에 대하여, 원지시인이 수신은행에게 지급지시하고 그것은 수신은행의 지급지시이행과 이체지급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구성한다.³³⁾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더욱 보호하고자 전자금융거래법은 개정을 거치게 되었다. 한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은 최근 개정(2013.5.22.)되어 법 제9조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핵심은 접근매체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이다. 필자처럼 파악한다면, 동 개정법은 개정목적은 상실한 셈이다. 왜냐하면 접근매체를 확대하였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관리하여야 할 것들이 늘어났고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늘어난 때문이다. 이 점에서 과연 개정법이 금융소비자를 더욱 보호하려는 것인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표시될 수 있다. 이 문제는 후술한다.

33) 강원진/이병렬, “거액전자자금이체에서의 지급지시의 효력”, 『통상정보연구』 (III권 1호), 106쪽.

(2) 업자의 책임 v. 이용자 중과실

제 9 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3.5.22.>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제목개정 2013.5.22.]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이용자 중과실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 즉 금융소비자를 개정전 법률보다 더 보호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시된다.

먼저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몇가지만 짚어 본다.

첫째 동 제9조 제1항은 위 표에서 보다시피,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라고 법문을 넣고 있다. 이 표현은 이용자에게 이미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위에 참고한 UNCITRAL의 국제신용이체모범법이나 미국통일상법전 내용에서도 물론 자세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는 의사표시의 효력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할 점을 남겨 한다. 법 제9조 제1항의 ‘손해’ 가 이용자에게 발생한 것인가. 적어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가령 피싱 등의 사례에서 명백하다.

피싱의 경우에는 비밀번호 등을 피해자를 유인하여 알아낸 다음 제3자와 은행이 거래한 것일 뿐, 당사자인 피해자는 은행에게 자금인출이나 이체 등을 지시한 바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³⁴⁾

나아가 단순히 피해자에게 비밀번호 등을 유인하여 알아낸 피싱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명백할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은행이 거래한 것이 아니며 오직 사기에 의한 지시자(제3자)와 은행간의 거래라고 해석될 수 있다.

위 본문은 재해석되거나 개정의 여지가 있다.

두 번째 보이스피싱이나 파밍에 의하여 접근매체를 재발급한 경우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새롭게 취급될 만한 유형의 사건이다.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 86489 판결 관련 제1심 판시내용
“이 사건 금융사고 발생에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34) 동 과제를 위한 워크숍(전자금융거래와 법적쟁점Ⅲ, 2015.10.22.) 중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발표자 서희석 발언 중 아이디어를 수록함.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를 허위의 대검찰청 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노출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원고가 제공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에 이 사건 금융사고를 저지른 것이고, 또한 이른바 전화금융사기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노출하면 제3자가 이를 가지고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피고들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0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한 금융사고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은행은 이 사건 금융사고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은행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출 처 : 서희석, 동과제를 위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전자금융거래와 법적쟁점Ⅲ) (10.12), 당시 발제문(“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11쪽.

그러한 이유는 성명불상자가 공인인증기관인 코스콤(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사건으로서, 비밀번호 일체를 이용자를 유인하여 성명불상자가 얻어내고 그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판결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서희석 교수는 ① 굳이 피고은행이 원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주의의무도 없다고 한 것이 무리한 금융회사에게 유리한 해석이라고 보았으며, ② 지금은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소위 ‘접근매체’에 포함되었지만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보안카드번호/보안카드비밀번호 등을 모두 법상 ‘접근매체’라고 보았던 것은 판결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³⁵⁾

35) 동 과제를 위한 워크숍(2015.10.22.) 자료집 중, 서희석 윗 글(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11·15쪽 및 발표중 발표자 발언내용 소취.

필자는 그 문제제기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개정하였지만 과연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진전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결국 이 사건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한 구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 본다면, 접근매체 위조(법 §9 ① i)가 아니고, 그렇다면 이용자의 중과실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 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제21조의 내용은 최근 화제가 된 법개정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 개정에서 법 제21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에게 소위 선관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금융회사의 법적 규율은 앞서 증권거래에 대한 positive system과 negative system의 미국법상 규율을 중심으로 대별시키기도한 것처럼, 본래 독일 법체계로부터 유래한 용어라 할 수 있는 선관주의의무는 금융거래상 그다지 주목받거나 원용하여야 할 의무로 각광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미국법상 충실의무 규정이 각종 관련 규범이나 규정이 다수 복잡하고도 자세하게 마련되어 있을 수 있다.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의 나열이라 할 수 있다.

법 제21조의2 제1항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2항은 대형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어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겸직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형이라 함은 총자산 그리고 종업원 수를 감안한다. 그런데 결국 감안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의 전문성을 위한 규정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심대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겸직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그 밖에도 업무의 독립성도 신장시킬 수 있는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최고정보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회사의 임원을 원칙으로 한다(동법 제2항). 그런데 임원은 상법상 이사와 감사를 말한다. 이사 등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말하며 실무상 흔히 사용하는 등기임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임원이어도 이사가 아닐 수 있고, 반대로 등기임원이 아니어도 이사일 수 있다. 물론 대부분 주주총회가 선출한 임원은 시간의 이격은 있을지 몰라도 등기되기는 하겠지만 반드시 그러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임원이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도 포함될 수 있다(동법 제2항 단서). 특히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사내이사 극소수와 사외이사 대부분으로 그나마 이사회 구성원 수도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법상 임원외에 다른 자가 추가될 수 있도록 입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전자금융업 감독 및 행정절차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 금융감독 행정에서 중추가 되는 곳이며, 물론 독립행정기관이다. 법은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동조 제2항). 금융감독원은 이 밖에도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검사하고 기타 출석 요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갖고 있다(동조 제3항). 벌칙 편으로 이월시키지 않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의하여 일정한 정도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벌칙 규정을 전자금융거래법 곳곳에 산재시켜 놓을 경우 과징금/과태료에 의한 기타제재 벌칙이 동시에 법조문 전체에 점점 별도로 조문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수범자의 법률 준수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행위유형에 대하여 너무나 다양한 벌칙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유출사고를 적절히 규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점이 잘 정리되어야 하고, 복잡한 벌칙 규정을 단순화함으로써 수범자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줄 필요도 있다.

영업정지 사유에 안전성준수의무(제21조제1항·제2항)를 위반한 경우도 포함되도록 추가(제43조 제2항 개정)되었다.

전술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방향이 진정 금융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주안점이 놓이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개정법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검토를 한 바 있다.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경고나 벌칙 제공 등에 중점이 두어지는 개정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신장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이 놓여져야 할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판례를 인용하여 접근매체를 확대함으로써 금융 이용자의 권리를 사실상 축소시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례라던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금융감독원의 벌칙이나 제재를 다양화시키는 수단만을 나열하는 개정법이라면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개정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제 3 절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 안전성

1.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될 당시인 2006년만 해도, 스마트폰 등의 보급이 활발하지 않았던 시대였고 전자금융거래가 온라인뱅킹이나 온라인 주식거래 등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정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편의성 및 법률관계 명확화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에 대한 조문은 한 개에 불과했다. 또한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안전성 확보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제21조에서 안전성 확보의무라는 규정을 선언적으로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던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금융감독규정으로 새롭게 고시하고 해당 규정을 통해 안전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규율하고 있었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의무를 신설하였다(제21조의2). 즉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조직 내 정보보호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인적 설비를 구축하는 것만으로 나날이 진화하는 금융사고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적 설비에 대한 구체적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전자금융기반시설 즉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대해 취약점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제21조의3). 또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침해행위금지를 규정하고(제21조의4), 만약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였다(제21조의5 제1항). 또한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였다(제 21조의5 제2항).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침해사고에 대응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다(제21조의6).

신용카드 정보유출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보안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인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였다(제21조의2제3항 신설). 또한 정보기술 부문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제40조제6항 신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및 IT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형벌 등의 제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였다(제46조, 제49조, 제51조).

2. 전자금융거래와 금융보안

(1) 국내외 금융보안 체계의 특징

미국, 영국 등의 경우 사후적 규제와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가 있는 반면, 국내는 사전적 일률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금융 보안 체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해 외(미국, 영국)	국 내
보안규제 방식	사후 책임	사전 규제
금융보안 주도	금융회사(PCI-DSS 인증 도입)	금융 당국
보안수준 차별성	거래규모 및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필요 보안수준을 차등 적용	획일적인 보안수준을 요구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음

제 2 장 전자금융거래법과 안전성

구 분	해 외(미국, 영국)	국 내
	소비자에게 보안수준에 대한 선택권 부여	
보안사고의 책임	전자결제업체, IT 기업, 금융 소비자에게도 책임 부여	금융당국이나 금융회사에 집중
보안인력 및 기술	보안인력이 풍부하고 검증된 FDS, 빅데이터 분석기술, 다양한 인증기술 등 확보	보안인력이 부족하고 FDS, 빅데이터 분석 등 기술 수준 낮음

자 료 : 박정국, “핀테크와 정보보안”, 정보과학회지(2015.5)

(2) 금융위원회의 금융 IT 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방안

2015년 6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책임 문화 조성이라는 금융개혁 방향에 맞춰 IT 보안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³⁶⁾ 사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은 다음과 같다.

<표 1> 최근 전자금융 관련 규제 완화 내용

규정 개정 내용	시행일	비 고
매체분리 원칙 폐지	'15.2월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폐지	'15.2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15.3월	
인증방법평가위원회 폐지	'15.3월	
국가기관 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 의무 폐지	'15.3월	

36) 2015년 6월 19일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결과(금융 IT 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 참조.

규정 개정 내용	시행일	비 고
금감원 보안성심의 의무 폐지	'15.6월말 예정	규정개정 추진 중
이 표는, 위 보도자료 붙임(‘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 1쪽 표 전재함.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 규제 패러다임이 타율적 규제에서 원칙중심의 자율규제로 변화함에 따라, 보안관리 주체별 역할을 재정립하여 규제공백 발생 우려해소 및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조기 안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주체별 역할방안으로서 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규 등을 원칙중심으로 정비하고, 상시감시 및 검사 강화 등 금융권 자율보안 기반 마련을, ② 금융회사는 자체 보안 점검·관리체계 구축 및 보안역량 강화 역할을, ③ 금융협회는 금융업권별로 보안 관련 협의체 활성화 및 가이드 마련 등을 통해 자율보안체계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④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 검토시 기술 지원, 보안 가이드 마련 등 자율보안을 지원하는 금융보안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하계끔 하겠다고 밝혔다.³⁷⁾

동 보도자료는 세부 추진방안으로서, (1) 자체 점검 및 책임 강화라는 목표하에 ① 금융회사 자율점검 강화, ② 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 가입수준 합리화, ③ FDS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을 하부 목표로 두고, (2) IT 보안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① 민관 협력채널 다각화·활성화, ② 금융보안 관련 가이드 신속 정비 등을 추진하고, (3) 민간 자율의 보안성 검토체계를 구축하고자 ①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 검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② 핀테크 기술의 보안 수준 진단 체계도 구축하며, (4) 감시체계 강화를 위하여 금융보안리스크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등을 각각 하부 목표들로 제시하고 있다.³⁸⁾

37) 위 금융위 보도자료(2015.6.19.), 2쪽.

38) 위 금융위 보도자료(2015.6.19.), 4~10쪽 참조.

3. 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

핀테크 등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조치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거래 관련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조치로 사용자 인증 및 정보유출 방지, 금융거래에 이상징후가 보일 때 이를 탐지할 수 있는 FDS(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마지막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복구 및 보상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1) 사용자 인증 및 정보유출 방지

1) 사용자 인증

지금까지 전자금융거래의 보안수단으로 사용되던 Active-X기반의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과 이용자 단말기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 의무설치가 폐지되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인증수단의 도입되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도용카드 사용이나 불명확한 본인인증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새로운 인증수단을 도입하되, 그에 대한 보안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의 가입자 정보를 통한 SMS 인증, NFC를 통해 사전에 인증하는 방식도 있겠으나, 최근 바이오 정보를 통한 인증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지문, 얼굴, 홍채 등의 바이오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다.³⁹⁾ 그러나 최근에는 바이오인식을 금융거래에 접목하여 본인을 인증하는 방

39) 신용녀, “해외 금융권 바이오인식 사례 및 표준화 동향”,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2015.7., 4면.

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바이오 정보가 위조될 경우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⁴⁰⁾ 또한 웨어러블 기기 사용 등 사물인터넷의 사용이 점차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인증절차에 대한 기술도 검토되어야 한다.

2) 정보유출 방지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도록 한 가장 큰 이유는 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매체의 보안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폐지되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버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데이터를 검색할 때마다 이를 복호화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서비스 속도가 저해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지 않고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⁴¹⁾

또한 전자금융거래시 단말기 내부에서 안전한 실행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해, 프로세서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TEE(Trusted Execution Enviroment)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프로세서를 일반영역과 보안영역으로 분리하여, 일반영역에서는 일반적인 OS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별도의 보안영역에서는 보안 OS가 설치되도록 하여 인가받은 애플리케이션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⁴²⁾

40) 신용녀, 앞의 논문, 27면.

41) 정준호/김정숙, “핀테크 서비스의 주요 사례와 보안 이슈”, 한국멀티미디어학회지 제19권 제1호, 2015.3., 13면.

42) 허세경, “핀테크 관련 보안기술 분석”,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2015.7., 103면.

(2) FDS(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금융거래수단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적용되던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제거함에 따라 보안에 취약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다.⁴³⁾ 이는 이용자의 거래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한 후, 이를 통해 만들어진 빅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시스템이다.⁴⁴⁾ 이를 통해 이용자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밀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⁴⁵⁾ 금융위원회에서는 2015년 4분기 중에 금융보안원에 FDS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FDS 시스템 구축에서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거래내용을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대응하는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각기 다른 금융회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⁴⁶⁾

(3) 금융사고 복구 및 보상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지만, 사고를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세우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사고 발생시 시스템마비, 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3의 피해자가

43) 한승우, “금융권 이상행위탐지기술(FDS) 이용 현황 및 전망”,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2015.7., 69면.

44) 정준호·김정숙, 앞의 논문, 13면.

45) 한승우, 앞의 논문, 69면.

46) 허세경, 앞의 논문, 109-110면.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 및 사고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⁴⁷⁾ 또한 금융사고 발생시 전문적인 IT 영역에 취약한 일반 이용자들의 분쟁해결을 도울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금융사고 피해자의 보상을 위한 기금을 사전에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4) 기 타

나날이 발전하는 IT 혁신 기술에 대응하여 보안에 대한 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때 중요한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보안 기술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인인증서와 같은 우리나라만의 보안기술을 IT 전반에 활용한 결과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였고 핀테크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였다. 특히 금융거래는 국경을 초월하여 글로벌 서비스로 이루어 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준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⁴⁸⁾

또한 참여기관의 적격성 기준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최근 삼성전자나 다음카카오 등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들의 금융거래서비스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격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의 규제차익이 발생할 뿐 아니라 안전성 확보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거래 참여기관에 대한 적격성 기준 및 안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⁴⁹⁾

47) 박정국, 앞의 논문, 31면.

48) 유재필/허세경, “해외 사례를 통해 알아본 핀테크 보안 이슈진단 및 보안 추진방향”, 정보과학회지, 2015.5., 35-36면.

49) 한세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보안 및 법제도적 과제”, 융합보안 논문지 제15권 제2호, 2015.3., 28-29면.

제 3 장 전자금융거래 동향: 핀테크 정책과 정보보호

제 1 절 핀테크 관련 금융당국의 정책

1. ‘IT·금융 융합방안’ 발표

IT·융합을 핀테크(Fintech) 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 추세는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오히려 IT 강국인줄로 알았던 한국에서 핀테크 발전의 추세는 미약하여 정책당국은 핀테크를 산업화하고 한국에서 이것이 산업으로 자리잡는데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느라 노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산업화 동향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있다.

첫 번째 핀테크 산업화 사례는 금융회사와 IT의 제휴나 위탁을 통하여 IT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신규 금융서비스가 점증하는 것(이로 말미암아 금융업의 기존 오프라인 영업점점이 온라인·모바일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을 통한 대출심사 전문성 제고 등 기존 금융서비스 제공방식도 환골탈태하고 있음)⁵⁰⁾

두 번째 사례는 IT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등 IT기업의 금융·결제업 직접 진출(애플페이, 알리페이 등)(글로벌 IT사업자가 금융관련 인·허가를 받아서 IT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하며, 특히 중국 등도 비교적 낮은 금융발전이나 부족한 지급결제 인프라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IT회사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활발)⁵¹⁾

이처럼 종래 한국이 발전하는 와중에 첨단기술을 하나하나 다 개발하지 아니하고 건너뛰어가면서 추월해가는 전략을 이제 신흥국이 개발할 뿐 아니라, 선진국의 IT업계나 금융업계도 적극적으로 IT 기술진

50) 금융위원회, 『IT·금융융합 지원방안』, 2015.1.27., 1쪽.

51) 위 보도자료 1쪽.

보를 수용해나가고 있어서 한국의 금융산업 그리고 IT산업자체도 외국의 활발한 성장세에 뒤지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 동향에 대응한 한국의 IT·금융 융합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① 초고속 통신망 등 ICT 기반을 내세우며, ② 얼리어답터로 표현되는 첨단기술에 대한 수용력 높은 소비자, ③ 최근 액티브 X 및 공인인증서 폐지 등에 대한 정책 당국의 의지와 핀테크 지원을 내세우며,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① 신용카드 등이 뿌리 내려 핀테크가 자리잡을 공간이 부족하며, ② 규제환경이 복잡하여 금융서비스 발전을 가로막고 있음(사전적·전자적 금융규제, 규제 불확실성, 오프라인 시대의 제도, 산업성장 미반영), ③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이해가 부족하며, ④ 금융보안에 대한 국민신뢰가 부족한 점 등을 꼽고 있다.⁵²⁾

본 보고서는 반복하여 지적하고 있다. 금융안전성을 해치는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대량으로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결국 전자금융업종의 발전도 저해할 것이라는 점과 직결된다. 위 금융위 분석에서도 보다시피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의 열광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이유로 꼽힌 것 중 하나가 결국은 금융보안에 대한 신뢰 부족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항 목	내 용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 전환	△ 사전규제 최소화 - 보안성심의 제도 폐지 -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제도 폐지 -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 개선 △ 기술 중립성 원칙 구현 - 특정 기술 사용의무 폐지 - 은행·증권사 금융거래상 Active-X 제거 유도

52) 위 금융위 보도자료, 2~3쪽.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부담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금융회사의 법적 책임성 인정 -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 보험제도 개선 △ 규제외 예측가능성 제고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수립 △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산업 기반 지원 △ 결제분야 낮은 규제 정비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테크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 민간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 지원 △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업권의 선불업 진출 허용 - 전자금융업 등록 자본금의 탄력적 적용 △ 전자지급수단 이용 활성화 △ 전자금융업종 규율 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실질에 따른 업종등록 규율로의 개선 - 전자금융업자 성격에 따른 합리적 규율 마련
금융보안을 토대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구축 △ 정보보호 및 금융보안 입법 노력 강화 △ 온라인 채널의 불완전판매 방지

출 처 : 최지현, 동 과제를 위한 워크숍(2015.4.13.) 자료집 11쪽 표 소취.

위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보면, 금융당국이 기존의 사전적이고 세세한 규제를 지양하고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와 제휴하거나 금융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장을 마련하고, 다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분명히 함으로써 금융당국의 간섭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즉,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보안기술에 대한 세밀한 규제는 지양하면서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엄격히 묻겠다는 입장인 것이다.⁵³⁾

전술과 같이 종래 한국 금융당국의 규제시스템은 positive system에서 출발한다. 이것이 2008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과 더불어 반대 방향이라 할 수 있는 negative system 즉 법률상 금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형태로 전환하였다. 이는 미국 금융제도의 특징적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전환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금융행정은 소위 준칙행정의 대표라고도 한다. 그만큼 행위유형이 다양하고 일원화할 수 없기도 하면서, 감독당국의 다양한 규제적 행위유형이 계속 존속하여 왔다. 이것이 일거에 방향전환하기는 힘들 것이고, 그것을 순간 포기한다면 금융감독 또는 금융규제가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위와 같은 연혁적 이유에서라도 사실상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환경은 모든 것을 규제하는 행정적 입장을 견지하여 왔고, 아직도 사실상 그러하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들도 모두 이러한 입장에서 있는 규정들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핀테크 산업을 신금융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핀테크 산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negative system에서 배양된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핀테크 산업이 모든 것을 규제하는 금융감독 환경에서 자라나기 힘들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이는 최근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무규제 원칙과는 대칭되는 것이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도 관건은 얼마나 무규제 원칙과 종래의 철저한 금융규제 원칙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느냐는 것에 놓여 있다고 보여진다.

금융위원회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53) 최지현 위 자료집 12쪽.

과도한 보안규율로 금융당국이 일률적 보안 구조를 구축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금융회사가 법규상 보안조치 이외 추가 조치는 소홀히 하면서 금융사고 발생시 동 법규를 면책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자문하고 있다.⁵⁴⁾ 그러나 negative system을 채택할지라도 금융회사에 대하여 포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심대한 타격을 사회에 안겨주는 사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중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필자의 판단에는 서론에서 문제제기한 것처럼 과도하게 기업중심의 사고가 사회에 만연되어 있고, 그것과 아울러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비판이 결합되어서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래와 같이 포괄적인 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융위원회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과도한 전산시설·정보기술·정보처리 시스템 보호 규제를 원칙 중심의 보안체제로 개선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한다.⁵⁵⁾

2. 금융보안원의 설립

금융당국은 2014.3.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금융전산 보안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금융결제원 및 코스콤의 보안관계조직(ISAC: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을 분리하고, 이를 금융보안연구원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금융전산 보안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이다.⁵⁶⁾

54) 금융위원회 위 보도자료 13쪽.

55) 금융위원회 위 보도자료 13쪽.

56)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 2014.3.10.일자 보도자료. (이는 최지현 위 워크숍 12쪽에 전거함)
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 설립 허가』, 2015.3.31.일자 보도자료.

금융보안원은 종전부터 존재하던 금융결제원 및 코스콤 보안담당자 (ISAC), 금융보안연구원 등 3개 기관 또는 그 담당 인력을 통합시켜 출범한 기관이다. 2015년 3월 31일 금융위원회의 설립허가를 받아서 2015년 4월 10일 출범하였다.

이와 같이 금융보안원을 설치하려는 것은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지나치게 많이 그리고 자주 일어난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금융보안원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조직을 재편하고 통합한 것이어서 과연 새롭게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 보아야 한다.

금융보안원은 2015.3.31일 금융위원회의 설립 허가가 있었고, 4월 10일 출범예정이다. 금융보안원은 그동안 은행, 증권 등 업권별로 구분되어 존재했던 침해 정보 공유의 벽을 제거하고, 업권 간 침해정보를 신속하게 공유·전파함으로써 침해사고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정보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⁵⁷⁾ 즉 종래 금융결제원과 코스콤 ISAC 간 유해 IP 정보만 공유하고 있을 뿐 기타 침해는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침해대응이 어려웠고, 정보공유가 가능하더라도 ISAC 분리로 침해발생시 즉각 대응이 어렵고, 전체 업권에 걸친 침해양상 탐미가 곤란하여 금융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이다.⁵⁸⁾

그 밖에도 침해탐지가 될 때에 ISAC간 정보공유에 시간이 소요되고, 통보받은 기관도 내용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며 공유받은 침해가 변형될 경우 대응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거론되며,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주요 국가도 금융 통합 ISAC를 운영중에 있다는 것 등이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⁵⁹⁾

57) 최지현 위 워크숍 13쪽.

5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4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업무현황』, 2014.10.15., 20쪽.

59) 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쪽.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원을 전술처럼 기존에 산재해 있던 조직을 물리적으로 통합 및 재편하여 선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의 능력에 따라 금융보안원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독립성도 확보될 수 있는 기관으로 키우는 것이 사회적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안원은 이와 같이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보안성심의 제도 폐지,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운영 제도 폐지와 더불어 새로운 핀테크 기술에 대한 금융회사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새로운 보안기술 및 인증수단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핀테크 산업이 육성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금융보안교육 등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실질적으로 금융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⁶⁰⁾

이와 같이 그동안 개인정보유출사고가 확대되고 자주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하는 견해도 물론 있었다. 하지만 교차 검증의 의미도 필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보안원이 예전부터 존재했다면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대량으로 그리고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없었겠는가. 그것은 금융보안원 또는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현재의 금융보안원을 구성하던 그런 조직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교차 검증이 가능하여야만 모든 정보가 한곳에 통합관리되는 때문에 생기는 정보의 소통 부재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왕 통합 기관을 출범시킨 상황이므로, 이제부터라도 금융회사로부터의 독립과 기업 책임을 보다 강화시킬 기관과의 연계(금융보안원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60) 최지현 위 워크숍 발표문 13쪽.

금융보안원은 비록 금융권에 국한되긴 하겠지만 각 금융업권별로 흩어진 정보보안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의 필요성,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 등의 명분이 충분히 설립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 반면 이러한 금융보안원의 설립에 대해서는 성격과 규모, 이해관계가 다른 기존의 세 기관의 통합이 내부적으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여부, 설립의 법적 근거 부재, 회원인 금융회사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이기에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초대 원장으로 외부인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달리 현 금융보안연구원장인 김영린 원장이 선임되었다는 점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⁶¹⁾

전술한 필자의 의견과 같은 지적이다.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특히 금융회사들과 유착하고 그들의 책임을 면제하고 보이지 않게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통합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정적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 금융회사가 출자한 자금으로 설립된 기관의 한계가 노정된다면 금융보안의 발전과 개인정보유출사고 재발의 방지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의 전자금융업의 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독립성이란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어느 한 세력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기관의 경우 정부로부터 출연받는 구조의 선택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금융회사의 이익이 중간에서 타협될 수 있는 구조를 택해야 한다고 본다.

제 2 절 핀테크와 정보보호

금융당국도 지난 2014.3.10일에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향후 핀테크

61) 최지현 위 워크숍 발표문 13~14쪽.

지원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금융보안을 토대로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정보보호와 핀테크 활성화가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가치임을 표방하였다. 그러면서도 핀테크 열풍에 합류하기 위해 일부 정책은 기존의 것과 비교하여 상충되거나 급선회한 듯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⁶²⁾

1. 비금융회사의 책임부담

현행 제도로는,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의 제휴 등을 통한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시 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하여 법적·행정적 책임을 부담하며, 비금융회사의 고의·과실로 소비자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가 1차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비금융회사에 구상권만을 행사한다.⁶³⁾ 금융회사가 법적 책임, 평판 위험을 다 떠안는 구조는 금융회사의 보수적인 영업행태를 조장하고 신규기술의 수용을 꺼리게 하기 때문에, 대형 IT회사, 핀테크 사업자들이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있을 경우 금융사고에 대하여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말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2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통하여 비금융회사의 책임부담 관련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정도를 제시하기도 한다.⁶⁴⁾

예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2(전자금융보조업자의 책임 예외)

-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보조업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법 제9조 제1항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가 계약에 따라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9조 제1항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62) 최지현 위 워크숍 발표문 15쪽.

63) 금융위원회 위 IT·금융융합 지원방안(2015.1.27.) 17쪽.

64) 금융위원회 위 지원방안 17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해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능력에 대해 충분히 심사해야 한다.

* (시행령 예시) 예상되는 손해배상책임 부담금액,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재무구조 및 책임보험 가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상책임능력을 측정

출 처 : 금융위원회 지원방안 17쪽 표 전재함.

위 금융위원회 지원방안이 예시한 개정방향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책임을 일률적으로 또는 강행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보조업자간 계약으로서 실행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을 금융위원회가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자발적인 핀테크 산업 부활에 조력하고 힘이 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물론 이것은 예시에 불과한 것이므로 실제 조문화될 경우 보다 정치하게 되기는 하겠지만, 핀테크 산업 자체가 소규모 아이디어기업을 상정하는 개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핀테크 산업의 육성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금융위원회가 설명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비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으로 예시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책임 예외’를 전자금융거래법에 삽입·신설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즉 동 지원방안에서 표현된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는 물론 보수적인 금융회사와 또 신기술을 현실에서 적용하는 사업을 펼치는 신기술금융 사업자의 책임을 균분·형평 배분하려는 고충이 있겠고, 한편 그 대책점에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IT사업자를 구별하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이 있다.

가령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이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자산 규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특히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하는 스타트업 회사가 사고

책임 부담능력 있는 회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며, 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책임 경감을 위해 주로 자본력이 있는 대형 비금융회사와의 제휴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다양한 IT 기술의 활용과 보안성 심의 폐지,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제도 폐지 등을 통해 스타트업에게 금융업에의 문을 열어주려는 본래 취지와 상충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대형 비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업에의 진출에 따른 명백한 수익이 예상되지 않는 한 책임 부담을 회피하려 하여서, 그 틈새를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차지하게 될 수도 있겠다.⁶⁵⁾

2. 보안성심의 제도의 폐지

통상 핀테크 산업은 무규제 원칙에서부터 자라나는 토양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금융당국은 종래부터의 무규제 원칙 도입 주장과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계속 들어 왔다.

보안성심의제도 폐지도 무규제 원칙 또는 사전규제 최소화라는 관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센터 구축이나 이전, 신규 전자금융업무 출시 등 보안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보안성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음 문제점들 즉 ① 금융회사 부담 과중(심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심사기간이 사안마다 상이), ② 보안수준 확보의 한계(보안성심의를 하더라도 신기술 검증의 한계, 금융사 사후 서비스 보안점검 노력 저해 가능성) 등이 지적되어 왔다.⁶⁶⁾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① 신규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심의 제도의 전면폐지, ② 사후적 점검 강화(금융회사 자체보안점검

65) 최지현 위 발표문 15~16쪽.

66) 금융위원회,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2015.1.27., 9쪽.

내실화 유도, 신종 거래구조·신종 인증수단 채택으로 보안우려가 있는 신규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후적검사 강화, 전자금융서비스 보안우려가 큰 경우 제재나 보완지시)로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⁶⁷⁾

필자로서는 무규제 원칙을 가급적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나, 사전규제 최소화 원칙의 적극적 채택은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다만 그것을 검사하고 위험한 신전자금융서비스를 걸러내는 사후 모니터링이 원활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다른 비판도 있다.

사후 점검을 강화하며 금융회사의 자체 보안점검 내실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한 제도의 존재가 각기 다른 정책목적에 따라 반복되는 것은 수범자의 입장에서 혼란스럽고,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보안성 심의를 당장 폐지한다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새로운 보안 기술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그 기술의 대중의 신뢰를 얻기까지 금융당국의 보안성 점검은 어떤 기준을 토대로 할 수 있을지도 문제이다.⁶⁸⁾

전술한 필자의 의견대로 무규제 원칙을 가급적 반영하려는 동향이나 사전규제 최소화 원칙을 보다 더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다만 사후규제가 가능하려면 모니터링 인력이나,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보호할만한 인력의 양성도 따라야 한다. 반드시 기술적 능력을 갖춘 인력의 양성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나 그들의 자치조직이라는 법형식을 취한 금융감독원의 인력을 충원받는 것이 아니라 독립되고 재정적인 자족성을 갖춘 인력까지 포함하여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67) 금융위원회 지원방안 10쪽.

68) 최지현/김애진, 『ICT기업의 지급서비스업 진출 관련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957호, 국회입법조사처, 2015.3.13. (최지현 위 발표문 18쪽에 전거함).

3.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제도 폐지

현행 제도는 전자금융에 의한 거래를 할 때에는 우선 공인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와 같은 정도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제도폐지를 위한 것도 역시 사전규제 최소화 원칙을 실현하려는 정책당국의 노력 중 하나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인증방법 사용기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동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이어서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주기, 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 내용 등) ①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는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거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상호저축은행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의 경우 연 1회 이상(홈페이지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취약점 분석·평가를 위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없는 경우 최고경영자가 지정한다)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중 100분의 30 이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기준에서 정한 고급 기술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이외의 자의 경우 연 1회 이상(홈페이지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되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약점 분석·평가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해당 주기 내에 평가 대상 시설과 평가 기간을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취약점 분석·평가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취약점의 제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시행
2. 취약점의 제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경영자 승인을 득할 것
3. 이행계획의 시행 결과는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할 것

[본조신설 2013.12.3.]

동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위한 평가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금융분야 정보공유·분석센터로 지정된 자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3. 침해사고대응기관
4. 금융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시행령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보고서를 금융위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여 매분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장은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필요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

그리고 공인인증서와 같은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결정하는 기관으로는, 인증방법평가위원회가 2010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인증방법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2010년 5월 발표된, 『전자금융거래시 인증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근거를 두고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되었다.

목적은 현행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가 스마트폰 등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적용되기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해, 다른 보안기술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⁶⁹⁾ 이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2010년 4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스마트폰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 30만원 이상의 전자결제와 e-뱅킹에도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을 적용하였다.⁷⁰⁾

4.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 개선

전자금융거래법 등 현행 IT 보안 법규들은 기술적 조치사항을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등 전지적 금융규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중심의 보안체계로 개선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⁷¹⁾

69)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의 안전성 가이드라인 확정”, 2010.5.31., 1쪽.
 70) 방통위 보도자료 2쪽.
 71) 금융위원회 위 지원방안 13쪽.

5.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

현행 금융관련 법규는 공인인증서 등 특정기술 또는 보안 방식을 법규상 의무화하거나 세부적 명시하고 있어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보안 노력 및 다양한 보안·인증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어왔기에, 특정기술의 사용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기술중립성 원칙’이 구현되도록, 정부는 금융관련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왔다.⁷²⁾

① 공인인증서 아용의무를 부과하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가 폐지되고, ②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존재하던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의무가 폐지되었으며, ③ 타 금융업법상 기술중립성 저해규정에 대해서도 해당 금융업권 내 거래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폐지·개선이 추진되었고, 은행·증권사 금융거래상 Active-X를 제거하는 것이 유도된 바 있다.⁷³⁾

이런 지속적인 과잉규제 개선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잉규제 개선과 더불어 필요한 규제까지도 없애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6.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

우선 법적 불확실성은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서비스 출현을 저해한다는 관점에서, 금융당국이 향후 예상치 못한 금융소비자 피해 또는 금융혼란 발생을 우려하여 기존 법률의 보수적 해석을 유지하는 경향이

72) 2014.10.15.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정부가 특정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기술중립성 원칙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미국 연방금융기관 검사위원회(FFIEC)도 2005년 인터넷뱅킹 환경의 인증 가이드라인에서 인증방법에 특정기술 강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함.(금융위원회 위 지원방안 14쪽)

73) 금융위원회 위 지원방안 15·16쪽.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국의 입장정리 등도 지연되지 않고 적시에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문제점 등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고 있다.⁷⁴⁾

금융위원회도 핀테크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적시 규제 또는 적시 철폐 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 소위 IT·금융융합협의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의 출현 가능성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어야 하므로, 기업과 금융소비자 양 측이 모두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7.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보보호 및 금융보안 입법 구체화

현행제도상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등 관련 일반 조항에 근거하여 전자금융의 안전성 규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3.10.)에서 개인정보보호와 더불어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 대책도 보강하려 하고 있는 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으로서 ① 개인정보의 『수집·보유·활용·파기』 등 단계별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집정보 최소화 및 과다수집 관행 개선, 비대면 영업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목표로 한다고 함, ② 금융회사의 책임 확실화 구조 확립을 위하여, 징벌적 과징금, 형벌, 행정제재 등을 강화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③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기존 대책을 보강하여 금융전산 보안전담기구 설립, CISO 전임제 도입, 내부 및 외주업체 통제 강화 등을 내걸고 있다.⁷⁵⁾

74) 금융위원회 위 지원방안 19쪽.

75) 위 금융위 지원방안 49쪽.

이를 더 구체화하여, ①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통과와 ② ‘법령 정비 실무TF’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법령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③ 전자금융거래법제 재정비 방안 법제화 등을 추가로 목표로 한다.⁷⁶⁾

금융위원회 지원방안도 밝히고 있듯이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개인정보유출의 추세를 막기 힘들 수도 있다. 과거 2000년대 초반 일본의 경우 대기업도 개인정보유출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파산한 사례가 있었다. 이를 유념하여 일벌백계의 효과도 같이 부여하지 않는다면 기업책임의 강화는 공염불에 불과하게 될 수도 있다. 어느 법인이건 어느 자연인이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려고 들지는 않는다. 책임이 명백하게 추궁될 수 있다는 것이 법상 확립되고 실제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제 3 절 핀테크와 금융

1. 의 의

핀테크라는 단어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것이듯이 금융 영역에서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의 최근 IT 동향을 이용하게 되면서, 핀테크 회사들은 송금 및 지급결제서비스, 자산관리, 대출, 자금조달 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2014년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30개의 핀테크 기업들이 설립되어 운영된다고 한다.⁷⁷⁾

76) 금융위 위 지원방안, 49쪽.

77) 김종현, “핀테크가 국내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KRX Market』(2015년 여름호), 36쪽.

아마도 천여개의 핀테크 기업이란 것은 축소된 통계이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규모를 갖는 핀테크 기업에 국한될 수 있다. 통계란 어떻게 기준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핀테크 기업의 개수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전체 산업정책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울러 한 나라의 경제를 퇴화시키지 않고 전진시키는 데에도 꼭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핀테크 산업이 주목받게 된 배경은 모바일 트래픽이 급증함과 동시에 모바일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가 늘어나 관련 산업이 발전할 여건이 형성된 때문인 바, 글로벌 모바일 트래픽량은 2013년 1.5엑사바이트(EB)에서 2018년 15.9엑사바이트(EB)로 연평균 61%⁷⁸⁾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⁷⁸⁾ 요컨대 핀테크 산업은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것이다. 초기 컴퓨터 시대에 단순히 저장용량만 급속히 확대되는 것에 뒤이어서 정보처리 능력이 가중되어 발전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산업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산업 발전은 향후 길지 않은 시대에 국가간 판도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육성은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날 핀테크 산업의 주력의 하나로 금융산업이 꼽히고 있다. 이 점은 중요하다. 한국은 주요 금융회사들이 사실상 외국 자본들에 의하여 경영상 지배받고 있다. 한 나라가 금융회사를 잘 조절하고 컨트롤 하는 것은 어쩌면 주권의 한 부분이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 핀테크 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갈수록 악화되는 심각성을 갖고 있는 경제력집중의 문제나 또는 외국계 자본이 과다한 분야에 대한 정책적 육성을 요하는 필요도 추가될 수 있다.

78) 김종현 윗 글 38쪽. 엑사바이트는 10의 18승 값이다. 참고로 메가바이트는 10의 5승 값이다.

방대한 모바일 트래픽 량은 개인 및 기업의 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가능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여 대출, 보험 등 금융업 사업방식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⁷⁹⁾ 후술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바로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혁신 IT기업의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외국에 비해서 발전이 미약한 분야를 정부가 복돋으려 한다는 점에 주의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2. 인터넷 전문은행

(1) 금융위 도입시책

금융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법·제도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⁸⁰⁾ 물론 그 정책기조는 그 전부터 확립되어 있었던 바, 온라인 전문회사가 증권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는 이미 진입해있으나 은행권에서는 엄격한 법률요건으로 시장진입에 장애가 있었다는 것이며, 1995년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이후 은행계와 비은행계 그리고 산업자본의 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고 하여 이러한 신종 핀테크 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채택하고자 한다.⁸¹⁾

그것을 위하여 첫째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전규제를 최소화하여 경쟁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을 얻도록 하겠으며

둘째 단계적 추진(Two-track approach)을 통하여 인터넷은행이 빠른 시일내에 나타나도록 조장하고 성공 확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하고,

셋째 2015년 7월에는 인가매뉴얼을 발표하고 9월에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하고 2015년 내에 1~2개 예비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⁸²⁾

79) 김종현 위 글 38쪽.

8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하락…』 2015.6.18.

81) 금융위원회 위 지원방안 23쪽.

82) 이상 위 인터넷 전문은행 보도자료 1쪽.

현재 해외에서 나타난 인터넷전문은행들은 1995년 최초로 출현한 미국에서 20여개, 유럽에서 30여개, 일본에서 8개 그리고 중국에서 2개가 영업중인 바, 그 소유구조는 은행은 주로 해당 은행의 사업부 형태이거나, 제2금융권의 자회사 형태, 자동차 또는 유통회사의 형태, 또는 상기업종간 합작형태 등으로 다양하며, 은행산업내 시장점유율은 대략 총자산 기준 1~3% 정도를 점한다.⁸³⁾

개관해서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미국에서 처음 출현하였고 각국에서 어느정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당초 점포가 곳곳에 깔릴 수 없는 미국같은 경우어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의외로 일본처럼 한국과 같이 전국 어디서나 금융회사 점포를 찾을 수 있는 곳에서도 성공하였다. 그러므로 한국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될만하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 과거 성장시대에 과소대출 구조에서, 갑자기 과대 대출 구조로 급변한 상태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무리한 대출 그리고 그것이 금융회사 건전성 침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생각된다.

(2) 비금융주력자 규제완화론 검토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규제가 존재하는 한 인터넷전문은행제도가 도입 될지라도 동 제도 취지상 목표로 하는 ICT 기업의 은행산업 진입이 불가능하며, 그 밖에 모회사 플랫폼을 활용한 특화사업추진⁸⁴⁾, 상당수의 고객(critical mass)을 확보함으로써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를 완화하려고 한다.⁸⁵⁾

83) 위 보도자료 2쪽.

84) 가령 자동차 회사가 종래 자동차 할부판매 등에 특화하는 제2금융 활동을 하던 것을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 주.

85) 위 보도자료 3쪽.

여기서 비금융주력자 라 함은 금산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은행법 제 15조86)에서 산업자본 등을 칭하는 용어이다. 본래 금산분리 정책은

86) 은행법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 ② 동일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은행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해당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었을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을 때
4.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
5.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를 포함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각 호에서 정한 한도 외에 따로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2.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3.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보고의 절차·방법·세부기준과 제3항을 적용할 때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위험성

특히 은행자본이 독점자본의 합종연횡의 핵으로 등장하면서 그 횡포가 자심하였던 미국에서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려는 목표로 출현한 법제도이다. 제2차세계대전후 독일과 일본을 점령하면서 군산복합체의 해체가 또 다른 전쟁을 잉태하는 최선이라고 생각한 미국 점령정책에 의거하여 재벌해체와 더불어 전파된 법제도이다. 따라서 재계에서는 다른 국가에는 완화되거나 사라지는 추세에 있는 것이 한국에서 유독 고착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항변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에 대한 금산분리 정책은 전례가 없는 입법이라고 비판한다.

모든 법제도는 해당국의 역사와 경험에 유용하게 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한국에서 독점자본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고 그렇다면 금산분리 정책은 한국에서 매우 유용하다. 특히 한국에서 보험회사는 다른 나라의 경험과 달리 재벌체제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금산분리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금융 업종이다.

2.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의 적정성

3.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의 규모

4.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⑥ 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해당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승인을 할 수 있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인 경우

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인 경우

3.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인 경우

4.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⑧ 금융위원회 또는 은행은 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점에서 위 보도자료가 열거⁸⁷⁾한 모회사 플랫폼을 활용한 특화 사업추진 등에 대하여, 필자는 비금융주력자 규제 완화는 또 다른 골목상권의 대기업 침투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3) 은산분리 규제완화 시책 검토

이에 대하여 동 보도자료는 은산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 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하며,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종래 4%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50%로 완화(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하겠다고 한다.⁸⁸⁾ 그 보완 대책으로서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규제완화에서 제외시킴으로서 경제력집중논란을 불식할 것이며, 보유한도를 경영권확보에 필요한 수준으로 50%를 제시하면서 타 주주의 견제기능이 유지되도록 할 것 그리고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것을 보완대책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⁸⁹⁾

본래 대주주 주식소유제한을 금융업종에 부여하는 것은 해당 금융회사의 여신한도 상당부분을 해당 금융회사의 대주주에게 줌으로써 모랄 해저드가 발생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을 방지하자는 것도 주요한 목적이다. 이를 감안한 정책을 보도자료가 제시한 것은 일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주주 견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를 외형상 축소하더라도 은밀한 내부자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는 탈법행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87) 다만 자동차 회사를 앞서 제시한 것은 필자의 생각이고, 보도자료에 열거된 업종은 ICT 기업이라 할 portal, communication, community(SNS, 메신저 등), e-commerce(전자상거래) 등을 예시하고 있다.

88) 동 보도자료 3쪽.

89) 동 보도자료 3쪽. 구체적으로는 대주주의 신용공여 한도를 축소하여 현행 자기자본의 25% 지분을 이내인 것을,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을 이내로 바꾸겠다고 한다.

것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대주주의 주식소유한도를 50%까지 완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러한 은밀한 내부자거래를 통한 대주주에 대한 편법적 여신 행위를 순조롭게 활용하도록 방관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 경영권이란 것은 주식소유 분산만 잘 되어 있다면 5%에서 10% 정도의 소유만으로도 얼마든지 해당 회사를 지배하고 장악할 수 있음은 이미 100여년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⁹⁰⁾

따라서 비금융주력자 규제 완화를 위한 대주주 주식보유제한 50%로의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초기에는 유인을 작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예컨대 자산규모 1,000억원)이 되면 원래의 은산분리에 입각한 규제조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4) 기 타

- 최저자본금 하향조정/영업범위 등

그 밖에도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이 현행 1,000억원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은 그 절반인 500억원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점 그리고 현행 일반은행도 은행의 고유업무, 겸영·부수업무 영위가 모두 가능한 상태인데 인터넷전문은행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라고 한다.⁹¹⁾

- 은행 건전성 기준은 바젤위원회 권고기준(BCBS) 등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는 자본적정성에 대하여 BIS자기자본비율

90) 이 현상을 가리켜서 경영자지배 현상이라 한다. Berle와 Means는 1920년대 미국의 주요 대기업의 실태를 토대로 하여 현대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분석하였다. 1932년에 출간된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operty* 에서 대규모의 주식회사는 경제력의 집중으로 자본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되고, 이로 인해 기업이 소유는 세분화되어 어느 개인도 지배주주가 될 수 없게 되고, 소량의 주식을 소유한 경영자가 의결권대리(proxy)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지배권을 장악하는 이른바 경영자지배(management control)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이철송, 『회사법강의』(23판), 2015.3.)

91) 동 보도자료 4쪽.

규제, 자산건전성과 관련하여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유동성에 관하여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예대율 등의 규제가 가해지고 있고, 그 밖에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유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영업행위 규제를 위한 설명의무, 공시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광고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⁹²⁾

이에 대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 초기에는 일반 은행과 구별하여, BIS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일반은행은 바젤Ⅲ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초기에는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BaselⅢ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Basel I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 의미는 바젤 I 은 대출·유가증권 등 자산성격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결정하지만 바젤Ⅲ는 차주별 Risk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⁹³⁾

92) 동 보도자료 5쪽.

93) Basel 협약의 변천에 대해서는 아래 표 참조.

	바젤 I	바젤 II	바젤 III
시행	1988 ~ 2003	2004 ~ 현재	2019 예정
출현 배경 또는 주요 골자	70년대 주요국 경쟁심화와 은행 수익성악화 → 고위험/고수익 위주 자산운용 전략 출현 → 자산의 질이 악화 → 80년대 중반 각국 금융감독당국들 은행 자기 자본 적정성 논의	바젤 I 의 한계 자각 → 개정 추진(1999 이 후) → 2004.6 신 BIS 협약(바젤 II) 출범 → 최저자기자본 규제 (Pillar I) · 감독기능 강화(Pillar II) · 공시강화 (Pillar III)	글로벌 금융위기 → 자본규제체계 개선 필요성 → G20 개편선언(2008), 바젤위원회 개정 논의(2009.7), G20 서울 정상회의 바젤 III 승인(2010), 최종발표(2010.12)
바젤 II 의 3축이 수행하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llar I 은 시장·신용risk외에 운영risk 추가하여 신용risk산출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 차등화, 신용등급은 외부 신용평가기관 또는 은행 자체 평가등급 사용 가능 - Pillar II 는 은행 자본적정성과 risk관리체계를 감독당국이 점검·평가하여 필요시 적절한 감독조치 - Pillar III 는 은행risk수준과 자본적정성 정보를 시장에 공시 의무화 	

- 전산설비 구축시 외부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며, 이는 설립 초기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IT전문업체 등의 전산설비를 외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인가 과정에서 외부위탁을 허용하려는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전산설비 외부위탁에 대한 별도 승인제도, 국외위탁시 수탁회사 제한 및 재위탁금지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⁹⁴⁾ 이 문제 특히 국외로 전산설비 구축에 대한 문제를 외주로 줄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전산설비 구축에 대한 문제는 국외 수주를 하는 것은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현실에서 한국의 금융정보가 외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요건상 한국보다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 취급은 조금 더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한국의 개인정보 가령 주민등록번호는 외국의 개인식별번호와 달리 개정이나 재발급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쉽게 허용될 수 없는 문제라 할 것이다.

	바젤 I	바젤 II	바젤 III
기여도 또는 내용	금융회사의 위험추구 행위 억제, 지급불능 사태 방지, 은행제도 안정성·건전성 강화	기업신용도 차이 감안, 내부등급방식 사용하고, 각 은행별 여신 포트폴리오 차이를 감안, 획일적 여신분류에 따른 정보 왜곡 개선	금융자본 질적·양적 강화, 금융자본 위험인식 범위 확대, 글로벌 유동성기준 도입, 경기 대응완충자본 도입 등
한 계	은행의 다양한 위험성(신용risk, 운영risk) 반영에 한계	금융회사 여신의 경기순응성을 악화시켜 금융불안 조장 → 2008년 금융위기사 한계 노출	

자료출처 : 성승제, 『국내 중소기업금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입법조사처, 2013.10., 27~28쪽 표5 전재함(이 표는, “송홍선/장정모/한상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기자본 규제에 국제적인 변화』, 자본시장연구원, 2012.12.”; “정신동, 『바젤3과 글로벌 금융규제의 개혁』, 선, 2011.” 참조하여 필자 작성)

94) 동 보도자료 6쪽. 이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예고” 보도자료(2015.6.10.)와 관련한 내용이다.

- 신용카드업 영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며, 이는 겸영여신업자(신용카드업)로 허가를 받으려면 30개 이상의 점포와 300여명 이상의 임·직원이라는 요건이 필요한 바, 인터넷전문은행은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인가하되 영업점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가요건상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의미이다.⁹⁵⁾

-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을 할 때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며, 이는 고객이 계좌개설시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여 은행직원과 대면(face to face)하여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바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점포없는 은행이 출현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서,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하겠다고는 목표하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중인데, 현재로서는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의 방법을 예시할 수 있다고 한다.⁹⁶⁾

(5) 인가절차

위와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나 기존의 금산분리나 금융회사 감독절차를 통하여 어느정도 확보하던 안전성 문제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하고자 금융위원회는 인가절차를 강화한다는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인가심사기준으로서 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외에도

- ① 사업계획의 혁신성(Innovation)을 고려하여, 기존 금융관행을 혁신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기존 은행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

95) 동 보도자료 6쪽.

96) 동 보도자료 6쪽.

- ②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춘 주주로 구성되고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갖추었는지 여부
- ③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Consumer Convenience)를 고려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더 낮은 비용이나 좋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금융소비자가 점포 방문을 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여부
- ④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Competitiveness)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금융기법,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여부
- ⑤ 해외 진출가능성(Global Expansion)을 고려하여 국내시장의 경쟁 뿐 아니라 아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실천 능력 등을 검증하겠다고 한다.

그 밖에 ⑥ 영업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보완적 심사 기준으로서, 전산사고 발생시 적절한 대응체계를 갖추었는지, 유동성 부족시 대주주의 적절한 자금공급계획이 있는지 등을 포함한 인가매뉴얼을 배포하겠다고 한다.⁹⁷⁾

이상과 같은 인가절차는 보기 좋은 백화점식 나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금융에 대한 법제도 설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정성 그리고 안전성에 주안점이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고객의 편의성이나 송금의 편의성에만 중점을 둘 것은 아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선진국 금융회사 창구에서 이체 또는 송금은 순식간에 처리되지 아니한다. 여러 단계를 거쳐 천천히 처리되며 그 대신 안전에 위배되는 상황이

97) 이상 6가지 항목은 동 보도자료 7쪽.

미연에 예방될 기회를 갖는다. 우리가 범상 사용을 강제하던 공인인증서 제도도 안전성 자체는 뛰어나게 설계되어 있으나, 속도를 높인 순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는 금융 기법이 부족한 점이 적지 아니하여 수많은 금융 충격을 사회에 뿌려 왔다.

최근에 벌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원고 작성 중 기억나는 사례를 소개한다.

첫 번째 사례는 소위 KIKO 사태라 할 것이다.⁹⁸⁾ KIKO통화옵션계약을 간단히 요약하면 고객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약간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 반면 고객은 필연적으로 변동할 수 있는 환변동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계약으로서 이 제조 도입을 허용한 정책당국자와 얼마간의 판매수익을 올리겠다고 판매한 은행 책임자 모두 지금이라도 형사 책임까지 부담하여야만 할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환헷지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자체가 영업 등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위 KIKO 통화옵션계약은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희생 불능하게 만들고 지속되던 경제력집중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2008년 금융위기가 벌어진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사건이다.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소위 안전통화로 불리우던 통화 즉 달러와 엔화는 급격히 양등하였다. 당시 국내에 비하여 이율이 매우 낮은 엔화를 차입하여 국내에서 단순히 저렴한 이율에 의한 상환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관측활동하며 대출해준 금융회사들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파산하였다.⁹⁹⁾

98) 상세한 내용은 성승제 『국내 중소기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33쪽 이하 참조.

99) 당시 원/엔 환율이 1600원까지 오르며 의사들이 폐업이나 심지어 자살하였다.

[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0035&newsid=20081206080204249](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0035&newsid=20081206080204249&p=moneytoday)
&p=moneytoday(최종방문 2015.9.1.)

세 번째 사례는 브라질 국채 파동 사건이고 현재 진행중인 사례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남미 여러나라들은 수차 금융위기를 겪어 믿을 수 없는 (매입한다면)투기적인 통화라고 할 것이다. 2010년 이후 브라질 헤알화가 시장성이 있다고 단순히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리분별없이 투자권유한 금융회사들로 인하여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겪어지게 된다. 2015년 들어 이 브라질 국채는 매입한 가격의 절반을 하회하고 있다.¹⁰⁰⁾

네 번째 사례는 현재 진행중인 중국증시 투자권유 사태이다. 현재 진행중인 중국증시 붕괴는 실물과 괴리된 상태로 중국 정부가 앞장서서 증시를 부양한 결과가 참혹한 사태를 낳은 것인데 고점대비 절반 가까이 추락을 눈 앞에 두고 있다.¹⁰¹⁾

다수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오래 전부터 중국은 과잉투자공급에 의한 버블과잉 상태라는 점을 누누이 지적하여 왔다. 여기서 과잉투자공급이란 경제성장이란 요소투입에 의하거나 생산성 향상에 의할 수 밖에 없는데, 중국은 저가노동인력투입에 의한 요소투입이 한계에 다다르자 다시 건설 등 과잉생산요소를 투입한(즉 버블을 주입하는)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다는 말이다. 역사적인 금융위기의 전문가인 킨들버거의 표현을 빌린다면 ‘버블은 항상 터지기 마련’¹⁰²⁾ 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버블붕괴를 피하기 위한 더 큰 버블 주입은 더 큰 붕괴를 낳는다. 기사는 불나방처럼 뛰어든 중국의 개인투자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불나방처럼 뛰어든 자들 중에는 고객의 돈을 앞세운 한국의 대형 펀드 등도 있다.

100) <http://gold.asia.co.kr/view.htm?idxn=2015061117542337105>(최종방문 2015.9.1.)

101) <http://kr.wsj.com/posts/2015/07/07/%EC%A4%91%EA%B5%AD-%EC%A6%9D%EC%8B%9C%EB%8A%94-%EC%96%B4%EB%96%BB%EA%B2%8C-%EB%AC%B4%EB%84%88%EC%A1%8C%EB%8A%94%EA%B0%80/>(최종방문 2015.9.1.)

102) Charles P. Kindleberger, Robert Z. Aliber,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원제: Manias, Panics and Crashes: A History of Financial Crises), 굿모닝북스, 2006(김홍식 역), 23쪽.

이 모든 사례들은 금융 안전성을 어떻게 하여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극적인 의문을 던져 준다. KIKO와 같이 고객이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앞에 무방비로 팽개치는 금융상품을 마구잡이로 판매한 행태, 위험한 통화에 대하여 단지 절세상품이라는 명목하에 무분별한 판매, 단지 이자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환변동을 무시한 판매 등이 이루어져 왔다. 중국 증시는 버블이 누적되어 왔고 킨들버거가 경고하였듯이 꺼지지 않는 버블은 없다는 진리를 망각한 무분별한 금융상품 판매가 적절한 제어 없이 진행되어 왔다.

제 4 장 전자금융과 본인 인증방법

제 1 절 전자금융 본인 인증방법 연혁

1. 인터넷뱅킹 인증방법 변화

(1) 인터넷뱅킹의 시작

세계 최초의 인터넷 뱅킹은 미국의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재무성 저축감독국(OTS: Office of Thrift Supervision)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1995년 10월 18일 적십자사 기부 거래를 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미 SFNB는 전통적인 지점을 갖지 않고, 네트워크 상에서만 영업을 하였고, 그 고객은 SFNB의 홈페이지(sfnb.com)에 접속하여 입·출금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던 바, 이후 시티은행 등 전통적인 은행 역시 기존의 영업점 서비스 제공 이외에 인터넷을 통한 영업을 시작하였다.¹⁰³⁾

(2) 미국과 인터넷·인터넷뱅킹

미국은 오늘날 세계의 중심국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소위 패권국가라 할 것이다. 미국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연상하는 바는 좋게 얘기하면 실용주의이고 안 좋게 측면을 생각한다면 헐리우드나 햄버거 정도를 연상하며 이는 그들이 마치 깊이가 없고 표피적인 인간이라는 논리로 연결되기도 할 뿐이다.

미국이 소위 패권국가로 자리잡게 된 이후 많은 것을 선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웬만큼 어려운 유형의 서적을 읽더라도, 미국에서

103) 이충열, “우리나라 인터넷뱅킹의 특성과 성공 원인”, 2005.3.,
www.kmfa.or.kr/paper/annual/2005/2-20.hwp(최종방문 2015.10.15.), 7쪽.

저술된 서적만큼 핵심적인 가치를 가장 손쉽게 알기 쉽게 의미를 전달하는 나라는 없다.

서론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근대화라는 것은 규격화, 표준화, 단순화 3대 요소를 핵심으로 한다. 이것은 필자가 오래 전부터 생각해 오던 개념이었다. 근대화는 정보의 전달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이는 헨리 포드가 착안한 자동차 회사의 컨베이어벨트가 중요한 핵심이다. 공정 기술에 따라서는 컨베이어벨트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한 경우도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오늘날 컨베이어 벨트를 당연시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착안이다. 사소한 기구나 사소한 수리를 하는데도 장인에 의한 도제적 방식에 의한 기능 전달만이 가능하던 전근대 사회를 극복해낸 것이다. 별것도 아닌 기능을 가르치는데도 전근대 사회에서는 평생을 기능제공자에게 헌신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던지 아니면 막대한 거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별것도 아닌 기술을 습득하는데 큰 장애가 되었다. 이러한 기술간의 장벽을 극복하고 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만 나와서 글자 해독만 가능하다면, 간단한 설명서를 읽고서 또는 간단한 사용상주의문구나 경고문구를 읽을 수만 있다면, 누구나 그 직전에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종합적인 기계 즉 자동차를 생산해 내는 작업에 투입될 수 있었다. 실로 미국은 20세기의 패권국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미국은 지속적인 혁신을 하였다. 인류 사회의 최대 공헌은 컴퓨터의 발명이다. 이어서 미국은 인터넷도 발명하였다. 당연히 인터넷뱅킹도 미국이 발명하였다. 이 의미는 신기술 금융의 전자금융이란 이 보고서의 주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매우 심대한 영향과 파급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3) 한국의 인터넷뱅킹

한국 최초의 인터넷 뱅킹은 1999년 7월 한국통신의 자회사인 KT commerce와 당시 신한은행, 주택은행, 한미은행 등 3개 국내 시중은행이뱅크타운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시작하였고, 이미 1999년말에는 22개 시중은행 중 16개 은행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였다.¹⁰⁴⁾ 공인인증서 기반의 인터넷뱅킹은 조흥은행에 의하여, 1999년 12월 9일부터 국내 최초의 공인인증서 기반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바, 기존에 인터넷 뱅킹이나 PC뱅킹을 사용하고 있었던 고객들은 지점을 방문해 실명확인 없이도 온라인상으로 공인인증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찾을 수 있다.¹⁰⁵⁾ 이 때부터 비대면에 의한 공인인증서 발급이 이미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전술한 최근 문제가 있다고 기술한 판결에서 보더라도 비대면에 의한 공인인증서 발급이 문제가 있다(물론 전화 통지가 없었던 점도 문제이다)고 분석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문제의 출발은 처음부터였다.

이미 인터넷뱅킹은 2004년말 국내 사용자수가 2427만명으로 20세 이상 인구의 103.94%에 달하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성공으로서, 미국이나 영국의 온라인뱅킹 등록률(Penetration ration)이 2002년중 25% 이하이고, 2004년 당시 전망으로는 미국은 2010년이 되어야 38%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Online Banking Report도 2004년 미국가구수중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는 비율이 34%인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도 입증된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의 인터넷뱅킹 성공에 대하여 자축하는 분위기였다.¹⁰⁶⁾ 그러나 본 보고서는 안전성을 우선 검토하는

104) 이충열, 윗 글 12쪽.

105) 소프트포럼 보도자료, “조흥은행, 국내 최초로 공인인증서 기반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 실시”, 2000.12.11., http://www.softforum.co.kr/05cyber/cy_sub02_01.asp?page=34&pkid=37&searchkey=&search=&isnotice=0(최종방문 2015.10.15.)

106) 이충열 윗 글 4쪽.

입장이어서, 이러한 인터넷 뱅킹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잘 알려진 것처럼 아파트단지가 많아서 획일적으로 설비를 깔기 편한 것에 힘입었을 것이라고 볼 뿐이다. 오히려 편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이때부터 이미 벌어지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초대형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뿐 만 아니라 핀테크 등 신기술기반 전자금융업 육성이 지연되는 것도 과도한 편의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분위기 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한국 인터넷뱅킹의 발전상 특징과 관련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을 소개할 수 있다. 이미 인터넷전문은행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계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도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앞서 적었듯이 미국 최초의 인터넷뱅킹은 이 세계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인터넷뱅킹은 인터넷전문은행과 무관하게 기존 은행들이 제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채널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없던 상태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들이 제공한 것이었던 바, 미국의 경우 전술한 SFNB가 시작하고 이후 NetBank, Firtst Internet Bank of Indianna 등이 이어갔던 것과 비교된다.¹⁰⁷⁾ 결국 인터넷뱅킹도 미국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반면에, 한국의 경우 공공기관에 의하여 시작된 호평하자면 위로부터의 개혁 또는 좀 저평가하자면 획일적이고 효율성 추구만 우선하는 문화의 소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잘 인식되다시피 효율성은 우수하지만 기반시설이 완벽하지 않아(개인정보보호 부실) 후행 신기술금융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07) 이충열 윗 글 14쪽.

(4) 표준화의 위험

앞서 적었듯이 근대화는 규격화, 표준화, 단순화를 요소로 한다. 그리고 이는 전술처럼 전근대사회에 존재하던 각종 장벽을 무너뜨리는 신시대를 여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표준화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표준화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니, 우선 혁신을 방해하기 때문에 표준화로 고착이 되면, 그 표준화 기술보다 더 우수한 기술이 개발된다고 하여도 시장에서 사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의 표준화는 정보의 한계로 인해 소비자의 선호를 잘 반영하지 못할 위험 그리고 표준화 이후 발생하는 지대로 인한 지대추구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¹⁰⁸⁾

(5) ‘공인인증서’ 사용시작

최초 인터넷뱅킹은 사설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는 체계서로 인터넷뱅킹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별로 사설인증서를 발급하여 PC에서 이용자가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후 1999년 7월 ‘전자서명법’이 시행되고 이후 2002년 정부부처(금융감독위원회, 금감감독원, 정보통신부)간 협의에 따라 인터넷뱅킹 및 온라인주식거래 등에 사설인증서 대신 본인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¹⁰⁹⁾

한국의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기업의 웹사이트들은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으며, 나아가 웹로그 데이터나 네트워크 분석데이터들을 가공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하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들은 주로 개인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다.¹¹⁰⁾

108) 송영관, “기술표준화, 정부개입, 그리고 공인인증서”, 『한국개발연구』(37권 특별호 통권 제127호), 2015.3., 7쪽. 이 쪽에서는 키보드와 관련하여 QWERTY 자판방식으로 시장에서 표준화됨에 따라, 더 우수한 드보락 자판방식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지 못하는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109) 강준모, “전자금융 본인 인증방법 연혁 및 관련 금융보안 정책방향”, 본 과제를 위한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회의(2015.1.28.) 자료집, 9쪽.

110) 황은진, “미국의 개인 식별 및 본인인증 방법”, 『World Inside 세상 속으로』(Vol. 86),

별도 법률근거 없이 온라인 금융거래에서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2006년 4월 『전자금융거래법』이 통과되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되었다.¹¹¹⁾

2. 외국의 본인인증방법

(1) 미국의 본인인증

필자가 전술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20세기 세계혁신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를 발명하고 보급하고 확산시킨 것도 미국이다. 따라서 IT기반에 의한 개인정보안전성 문제에 대한 본인인증방법을 살펴 보면 있어서 미국제도를 볼 의의가 있다.

미국은 법률로 개인식별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으며, 미국의 개인정보는 연방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과 각 주 법률들이 있지만, 대부분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영역별 보호 법제를 가지고 있다.¹¹²⁾

미국에서 개인식별코드로 사용하는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은 주로 연금과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9자리의 순자로서, 금융 사이트에서 온라인 계좌개설시 신원확인을 위한 절차로만 사용되고 그 이외의 전자상거래, 포탈 등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¹¹³⁾

필자가 현지에서 잠시 경험한 바로 보더라도 사회보장번호는 언제든지 본인 신청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여서 개인정보유출이 혹 된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운전

2014.5/6

111) 강준모 윗 글 9쪽.

112) 황은진 윗 글 78쪽(본문 중 전은정 외 2012로 표기된 것에 전거함).

113) 황은진 윗 글 79쪽(본문 중 문창주, 2007로 표기된 것에 전거함).

면허증도 개인식별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선택적이다. 또 다른 경험에 의하면 우리 인식상 사소한 질서위반에도 가혹한 처벌이 내려진다. 예컨대 자녀의 더 좋은 학교 진학을 위하여 좋은 학군으로 변경하고자 주소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안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유기징역이 실제로 부과되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질서위반에 대한 명확한 처벌은 확실한 기업들의 정보유출사고에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우리나라 현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개인정보유출이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느슨한 사회구조 또는 증명서 발급을 매우 제한할 수 있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미국에서 금융사이트를 제외한 공공기관이나 기업 사이트는 명확한 본인 인증 시스템 없이 이름, 생일, 주소 등의 입력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¹¹⁴⁾ 요컨대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는 본인 인증을 하는데 유일하고 필수적인 수단은 아니어서 사회보장번호를 대신하여 운전면허, 학생증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예전부터 사회보장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였고 사회보장번호 생성방식을 변경하는 등 이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개인의 사유로 인하여 사회보장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선택도 가능하다.¹¹⁵⁾

(2) 독일의 본인인증

독일은 기명과 서명 같은 전통적인 방식을 주요한 인증방식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표를 받거나 공공기관에서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한 후에는 신용카드 뒷 면 혹은 신분증(Personalausweis)에 포함된 서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러한 절차는 정확하게 지켜지며,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서

114) 황은진 윗 글 79쪽.

115) 황은진 윗 글 81쪽.

비스일지라도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기명과 서명을 한 후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팩스나 모사전송 등의 방법은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¹¹⁶⁾

서명에 의한 본인 인증은 아마도 주요 선진국들에 깊이 뿌리내린 방법이라 할 것이다. 앞서 기술한 미국의 경우에도 잠시 경험한 바에 따르면, 간단한 자동차보험 가입이나 기타 대부분 경우에도 직접 본인이 서명한 수표를 사용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인의 감각으로는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할까 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일단 서명하고, 그 이후에 직접 교부하는 것도 아니고 우송해 주게 되는 시일이 소요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그 밖에 ① 공증에 의한 인증도 광범위하게 이용되며, ② 주소/거소 인증을 위하여 초인종과 문패에 표시/부착된 성명과 신고된 성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거나 경우에 따라 실거주공간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물건들(사진/편지/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공문서 등) 또는 이웃에 대한 탐문까지도 실시될 수 있으며, ③ PayPal 등 지급대행업을 이용한 결제정보 인증, ④ 우체국(PostIdent) 인증(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체국 직접방문에 의한 인증과 집배원이나 우체국직원이 주소지에 방문하는 편의인증 등, ⑤ 복잡한 방법에 의한 개인 신분증 등 다양한 방법을 갖추고 있다.¹¹⁷⁾

독일의 경우에는 가장 복잡한 방식의 본인인증을 사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위와 같은 독일의 본인인증과 그 보안에 철저한 의식은 스팸메일이 거의 없는 사회적 현실과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에 보다 안전하도록 하는 사회적 완충장치의 역할을 한다.

116) 이일호, “독일,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인증 및 개인식별”, 『World Inside 세상 속으로』, 2014.5/6, 82쪽.

117) 이일호 윗 글 82쪽 이하 참조.

(3) 일본의 본인인증

일본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식별을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널리 활용되는 통일적인 식별체계는 없었으며, 2002년 8월부터 ‘주민 기본대장네트워크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임의의 11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주민표 코드’가 각 개인에게 할당되었고, 다만 이는 시정촌과 도도부현, 지정 정보처리 기관 및 주민 기본대장법에서 정한 국가기관 및 법인만이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교부율이 5%대에 머물러 있어 실패한 정책으로 꼽히기도 한다.¹¹⁸⁾

일본도 전자서명및인증업무에관한법률(약칭 전자서명법)을 기반으로 한 전자서명.전자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은행업무나 전자상거래에 이러한 전자증명서 제출이 필수적임에 반하여 일본은 국세전자신고 및 납세를 위한 e-tax시스템 등에 한정적으로만 사용되어 왔다.¹¹⁹⁾

그런데 2013년부터 새로운 개인식별제도인 마이넘버제도가 확정되었는데 이것은 거의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2013.5.24.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16년부터 시행이 결정되어 있지만 이 역시 실제 카드는 희망자에 한하여서만 발급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유출에 따른 위험성이 지적되고 또한 과거의 제도처럼 일부에만 한정되지 않고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처럼 널리 활용될지는 지켜보아야 한다.¹²⁰⁾

118) 김유미, “일본의 개인식별 및 본인인증제도의 현주소와 미래”, 『World Inside 세상 속으로』(vol. 86), 2014.5/6, 96쪽.

119) 김유미 윗 글 97쪽.

120) 김유미 윗 글 98쪽 이하.

(4) 시사점

주요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한국과 같이 통일적이고 획일적이고 또한 강제적으로 일률적인 개인정보를 활용한 본인인증 방식이 강행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모든 제도들이 대부분 대체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한 등 일종의 탈출구 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을 상당히 완충시키고 있다. 물론 일본의 경우 어느 정도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것이 최근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례를 본 받아야 할 좋은 제도라고 꼽기는 힘들 것 같다.

3. 온라인 신용카드 사용 관련

2003년 정부는 당시 재정경제부 주관 하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안전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쇼핑몰의 비대면 결제 사용피해 등을 감안,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2003년 6월)하였는데, 그 대책의 주요 내용 중에 인터넷쇼핑몰 신용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¹²¹⁾

이러한 공인인증제도는 물론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동시에 금융감독을 전지적으로 실현하려는 기존의 금융감독 관행도 내포되어 있다. 사실 공인인증제도는 현 시점에서는 가장 완성된 수준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 중 하나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되는 것은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보안수준과 기술의 사용을 강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표준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앞서 적은 바와 같다.

121) 강준모 윗 글 10쪽.

신용카드 10만 원 이상 온라인 결제 시 공인인증제도 사용내용을 검토하여 신용카드업자에 통보(2003년 7월)하게 되었고,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공인인증서를 갑자기 일시에 적용함에 따른 마찰적 시장충격을 완화하고자 기존 인증방법¹²²⁾과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신용카드업자에 통보(2003년 12월)하였다.¹²³⁾ 공인인증서는 2004년 4월 1일부터 전면 적용하기로 하였었지만 2004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주재로 개최된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 관련 관계부처 조정회의』 결과 신용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적용은 '04.9.11부터 향후 2년간 적용유예하기로 결정하고 그 이후, 이후 2007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라 온라인상 신용카드 30만 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었다.¹²⁴⁾

이와 같은 온라인 신용카드결제에 공인인증서를 원칙적으로 강제적으로 사용하던 제도는 2014년 폐지되었다.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원칙적으로 강제하던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다만 여전히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의 결제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은 같다. 물론 공인인증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분간 공인인증서 제도의 사용은 계속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완벽성이 어느정도 만족되는 것이 공인인증서 제도라는 점에서 이 시행세칙의 개정은, 향후 새로운 보안기술의 발전을 막지는 말자는 것 정도로 의미를 새길 수 있겠다. 그래도 10여년 이상 공인인증서가 강제로 사용되었던 환경과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속박이 있었던 탓에 완전히 공인인증서 환경이 사라질 수는 없다. 실제로 대부분 경우 그 동안 익숙했던 공인인증서 제도를 여전히 사용한다는 통계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122) 안심클릭, ISP(Internet Security Payment).

123) 강준모 윗 글 10쪽.

124) 강준모 윗 글 10쪽.

제 2 절 본인인증방법 · 책임 관련 법률조항

1.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새로운 본인 인증방법과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은 정의조항(제2조)에서 접근매체의 개념에서 이용자 ‘생체정보’를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그 밖에 기존 마그네틱, IC카드 및 해당 비밀번호, 전자서명 개인키·공인인증서 및 해당 비밀번호, ID·패스워드 등도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¹²⁵⁾

접근매체에 대하여 앞서 검토한 판례(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 86489 판결)의 판결문을 보면 접근매체 중에 보안카드번호와 그 비번을 알려준 것도 접근매체라고 실시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이는 판결의 오류라 볼 수 있다. 접근매체에 대한 규정 중 보안카드와 그 비번에 대한 문구는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을 접근매체라고 봄으로써 그것을 피싱 또는 파밍의 상대가 되어 알려준 피해자에게 금융사고의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판결이 나왔음은 동 과제를 위한

125) 강준모 윗 글 14쪽.

워크숍에서 서회석 발표에 따른 문건을 인용하여 전술하였다. 접근매체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명료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변조, 거래지시 등의 처리과정 중 사고, 해킹 등에 의한 사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만, 전자금융거래 약관상 이용자(중소기업 포함)의 고의·중과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융회사 등이 이를 밝히는 경우 금융회사 등은 면책될 수 있다¹²⁶⁾는 점을 전술한 바 있다.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은 ① 접근매체의 제3자 대여·사용위임·담보제공, ② 제3자의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노출(방치)·누출한 경우, ③ 금융회사 등이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 위 ③의 추가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정보)를 제3자 대여·사용위임·담보제공, 노출(방치)·누출한 경우로 한정하였다(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¹²⁷⁾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126) 강준모 위 글 14쪽.

127) 강준모 위 워크숍 자료집 글, 14~15쪽.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③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위 박스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라 이용자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검토한 판례(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 86489 판결)를 보면 접근매체를 확장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위에서 인용하였다.

접근매체를 법문에 없는 것까지 널리 보게 된다면 금융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재검토될 필요도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공인인증서 사용기준)

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이하 “공인인증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제도적으로 공인인증서등의 적용이 곤란한 금융거래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금융감독규정 문구에서도 현재 공인인증서 제도는 강제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 기술적인 성취도는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법문에서도 나타난다. 즉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책임이 부담된다면 그 인증방법을 반드시 공인인증서 수준의 안전성에 맞출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독일의 본인인증방법에 대한 전술례를 보았지만, 개인의 서명이나 이런 것에 의한 추가자료 우송 등의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물론 이는 전자금융거래는 아닐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라는 것을 단순히 비대면에 의한 금융거래 라고만 본다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것을 우송하는 방법에 의한 인증방법도 포함될 여지가 있겠다. 하지만 학설상 또는 법상 정의는 전자적 처리를 해야 한다는 요건도 추가되기 때문에 물론 해당되지 않는다.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 4 조(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 예외) 규정 제3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기술적·제도적으로 공인인증서 등의 적용이 곤란한 금융거래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계좌에 대한 조회 업무
2.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서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4.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5. 법인이 금융회사와 연결된 전용선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6. 신용카드 대출서비스(현금서비스, 카드론 등)를 실명 확인된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7. 보험사의 보험금, 대출금 등을 실명 확인된 본인명의로의 보험료 납입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8. 음성전화, CD/ATM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
9. 가맹점과 이용자간 직접 대면확인이 가능한 상거래(오프라인)에서 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10.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범위를 정하여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 예외를 요청하고 감독원장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을 폐지하였다고는 하지만 이상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공인인증서가 아직도 다수 그리고 널리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금 더 공인인증서 제도에 대한 사후규제 원칙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본래 여신이란, 요컨대 돈을 꾸어주는 것 일체를 일본식 한자어로 부르는 명칭이다. 신용을 준다는 의미이니, 결국은 금융의 의미 중에서 돈의 흐름 중 한 쪽 방향만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머지 한쪽은 물론 수신이라 부른다.

법상 여신이란 표현은 상법상 제46조 상행위 유형에도 보이고, 같은 상법 제542조의9에는 신용공여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대부업법도 여신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그 밖에 여러 법률에서 여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오히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명칭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 조문상 여신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요컨대 여신전문금융

업법은 여신을 행하는 수다한 금융회사 종류 중 한가지의 유형에 불과하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업을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이라고 정의한다(법 제2조 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업을 구성하는 세가지 업에 대한 규정은 1990년대 후반 각각 신용카드업법, 시설대여업법, 할부금융업법, 신기술금융지원법이 통합한 것으로부터 연유한다. 이 중 본 보고서 제목상 어휘와 유관한 표현인 신기술사업금융업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하는 업무(법 제41조) 즉, ①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동조 제1호), ②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용자(제2호), ③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제3호), ④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제4호), 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제5호)에 적용된다고 함으로써, 한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 ~ ④ (생략)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1. 위조(偽造)되거나 변조(變造)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盜用)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지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 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할 수 있다.

위 박스처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동 법 제16조에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행위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업자의 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무과실책임이라고 이해하면 곤란하다.

이것은 입증책임의 전환의 문제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6. (생략)
7.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
8. ~ 10. (생략)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법과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함)은 별도규정이 없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신용카드업자의 준수사항의 일환으로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신용카드 온라인 사용관련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기준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최근인 2014년 12월 간편결제 관련 규제완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PG포함)이 보유하지 못하는 신용카드 제반정보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PG포함)도 신용카드 제반정보를 직접 회원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¹²⁸⁾

128) 강준모 윗 글 17~18쪽.

제 3 절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 개념 및 분류

1. 전자금융거래 인증

전자금융거래 인증체계에 대하여는 개념을 양분하기도 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인증이란 어떤 행위 또는 문서의 성립 기재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공적기관의 증명하는 일이라 한다.¹²⁹⁾

협의를 전자금융거래 인증체계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제도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정된 요소와 인증기술을 의미하고, 광의의 전자금융거래 인증체계는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법·제도와 협의의 인증기술을 보완하는 기술적 수단을 모두 포함한다고 한다.¹³⁰⁾

요컨대 해당 법상 규정된 방식의 인증체계이냐 아니냐인 것으로서 협의와 광의를 나눈 견해인데, 협의와 광의의 분류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가 나타난 사실 자체가 우리의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규율 방식이 열려져 있지 않고 전지적 형태의 금융감독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지금 추세는 무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나 또는 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의미있는 전자금융거래 인증체계는 광의의 개념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종래 공인인증서로 강제되던 방식이 폐기된 때문이기도 하며, 금융보안의 다양한 방법이 개화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된 때문이다.

129) 네이버 검색에 의한 두산백과.(최종방문 2015.10.1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6384&cid=40942&categoryId=31721>(2015.10.28. 검색).
130) 강우진 외 7인(금융보안연구원), 『전자금융거래 인증체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2013.10.15., 22쪽.

전자금융거래 인증체계에 대한 법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을 먼저 꼽을 수 있겠다. 그 외에도 法源으로는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도 있다. 법률 외에도 『전자금융감독규정』 그리고 『전자금융감독시행세칙』 등도 직접 관련된다.

2. 인증수단 분류

전자금융거래에서 인증수단이란 본인임을 확인하고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로 구성된 본인 및 거래 인증수단(이하 ‘전자금융거래인증수단’)을 말하여 금융회사의 지점 등 오프라인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등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자금융거래가 지난 20여년간 크게 증가하는 동안 전자금융인증수단은 보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속 개발되어 왔고, 현재 금융고객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요 인증수단은 다음과 같다.¹³¹⁾

<표 2>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

구 분	전자금융인증수단 예시
지식기반(What I Know)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소지기반(What I have)	현금카드,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일회용비밀번호(OTP) 단말기, 보안카드 등
생체기반(What I am)	지문, 홍채, 정맥정보 등
기 타	이중요소(2-factor) 인증, 2채널(2-channel) 인증, 거래서명 인증 등

출 처 : 위 박배효 45쪽 중 표 전재함.

131) 박배효,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의 개념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의의”, 본 과제를 위한 전문가회의(2015.1.28.) 3주제 발제문 45쪽.

위 서술한 것을 인증 요소에 의한 분류라고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 외에도 인증대상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인증대상에 의한 분류는, 로그인시에 원격지의 거래당사자를 확인하는 이용자인증 등의 객체인증(Entity 인증. 이는 사용자(Human), 디바이스(Device), 정보처리 시스템 등의 서버(Server)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주로 이용되지만, 전자금융거래는 거래내역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거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체거래 등에서 거래인증을 추가로 한다.¹³²⁾

그 밖에도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분류될 수도 있다고 하며, 이것도 인증대상에 의한 객체인증은 재차 금융회사에 접속하는 거래당사자를 인증하는 이용자인증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인증하는 서버인증 등으로 분류된다.¹³³⁾

상기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 중에서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보다 많이 사용되며 최근 메모리 해킹 등 전자금융 보안사고로 인하여 주목 받고 있는 안전한 인증수단으로 거래서명 인증수단이 있다.¹³⁴⁾ 사실 서명 기반의 인증수단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국내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을 들 수 있으나, 해당 기술이 메모리 해킹 등에 일부 취약성이 드러난 바 있어 사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전자적 장치(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기타 전자적 방법의 정보전송 내지 처리 장치)가 아닌 별도 전용장치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직접 입력(또는 입력에 관여)하여 해당 거래에만 유효한 인증정보를 생성하는 일회용비밀



132) 강우진 외 7인 보고서, 24쪽.

133) 강우진 외 7인 보고서, 24쪽.

134) 박배효 윗 글 46쪽.

번호(OTP 방식) 기반 및 디지털인증서(PKI 방식) 기반의 거래서명 인증수단을 따로 분리하여 제시한다¹³⁵⁾.

<표 3> 거래서명 인증기술 종류

거래서명 인증기술	일회용비밀번호 (OTP 방식) 기반	디지털인증서 (PKI 방식) 기반
사용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정보(OTP 생성키 등)를 스마트카드 또는 보안토큰에 저장 - 별도의 인증매체에 거래정보를 직접 입력하거나 전달받아 거래서명 생성 - 생성된 값을 전자거래 화면에 직접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인증서를 스마트카드 또는 보안토큰에 저장 - 사용자 PC와 연결된 보안토큰에 거래정보를 전달 - 사용자가 거래를 확인한 후 거래서명을 생성·전달
적용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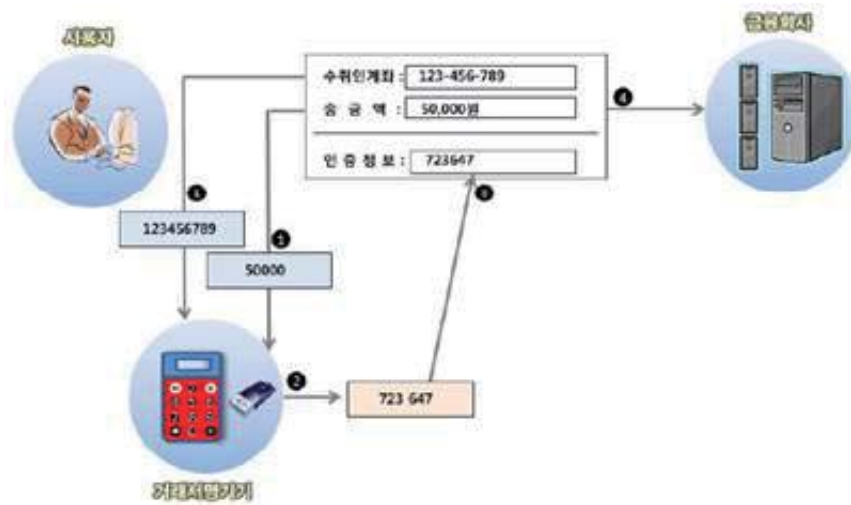
출 처 : 박배효 윗 글 47쪽 표

위와 같은 다양한 방식들을 제공하는 것은 우선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전자금융거래가 통일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가 표준화에 의한 오류. 즉 전술한 표준화에 의한 더 우수한 기술의 사장이라든가, 표준화에 의한 지대 추구 등의 부작용이 나타

135) “전자금융환경의 거래서명 인증기술 동향 및 도입 시 고려사항”, 금융보안연구원, 2014년 제2호. 박배효 윗 글 46쪽 재인용.

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기술들은 사실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몇가지 안되는 방식이어서 조금 더 다양한 기술들이 나타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재는 공인인증서로 통일시키던 상황이 변한지 얼마 안 된 만큼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그림 1> 거래서명 인증방식 개요



출 처 : 박배효 글 47쪽 그림

3. 인증수단과 접근매체

전자금융거래의 정의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는 접근매체를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동조 제10호)라고 하면서 각각 다음과 같은 것을 접근매체로 본다.

즉

- ①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동호 가목),
- ②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동호 나목),

- ③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동호 다목),
- ④ 이용자의 생체정보(동호 라목),
- ⑤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동호 마목) 으로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것을 표제어로 한 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그 제1항에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법문상 접근매체는 상기 설명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의 일부분으로서 전자금융거래 시 본인 및 거래 확인을 위한 적용 의무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9조도 금융회사 등이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 및 거래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으로 포함될 수 있다.¹³⁶⁾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규정(제1항)을 두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지우게 되므로 금융회사 등으로서 접근매체로서의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이 위조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되지

136) 박배효 윗 글 48쪽.

않도록, 또한 거래지시 등의 처리과정 중 해킹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¹³⁷⁾

반면, 동법 제9조에서는 개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금융회사 등은 면책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로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접근매체 및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 포함)의 노출·누출 등을 들고 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판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¹³⁸⁾.

137) 박배효 글 48쪽.

138) 최근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13다86489, 2014.1.29.선고)에서는 위 법령이나 약관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설시한 바 있음.

박배효 48쪽에서 인용 및 재인용.

제 5 장 전자금융거래와 국경간거래

제 1 절 한국과 FTA

세계 무역환경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와 WTO의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과 같은 다자간 협상이 동시에 활발히 진행되는 등 국제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¹³⁹⁾ 다만 현재 DDA는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Qatar) 도하(Doha)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를 통해 새로 출범한 DDA 협상이 두 차례의 협상시한을 넘긴 채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자유무역주의 기조의 진전·정착 및 세계경제 통합과 국제통상규범의 통일화를 위한 규범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¹⁴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特惠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¹⁴¹⁾ 2015년 6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398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이 23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RTA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여 전체 398건 중 95년 이후에만 348건(87.4%)이 발효되었다.¹⁴²⁾ 이하 RTA와 FTA는 모두 FTA라 부르기로 한다.

139) 문준조, 『FTA의 체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10.29., 93쪽.

140) 심영규, “지역무역협정(RTAs)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법학연구』(51권 1호), 부산대 법학연구소, 2010.8., 3~4쪽.

141) [http://www.ftahub.go.kr/main/situation/fta/term/\(2015.8.12. 최종방문\)](http://www.ftahub.go.kr/main/situation/fta/term/(2015.8.12. 최종방문))

142) [http://www.ftahub.go.kr/main/situation/fta/term/\(2015.8.12. 최종방문\)](http://www.ftahub.go.kr/main/situation/fta/term/(2015.8.12. 최종방문))

이처럼 FTA로 통칭되는 협정들은 두 개 이상의 국가들이 자국의 관세 및 수입제한관련 제도를 상호 철폐·자유화하고 서비스시장 등도 개방함으로써 무역증진을 도모하는 지역간 협정을 말하는 바, FTA는 비당사국에게는 적어도 당사국들이 합의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는 불리한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¹⁴³⁾ 사실 이러한 현실은 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무차별원칙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 바,¹⁴⁴⁾ 이는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WTO체제 내에 폐쇄적인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것은 상호모순이라 할 수 있다.¹⁴⁵⁾ 상호모순 즉 FTA가 이전 GATT 나 현재 WTO의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에 새로운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이냐 아니면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하는가 논란이 일고 있다.¹⁴⁶⁾

한국은 2004년 2월 한국·칠레 FTA 가 발효된 이래, 2015년 8월 12일 현재 아래 표와 같이 11건의 FTA가 발효되었고, 5건이 타결된 상태에 있다. 협상 진행중인 것이 3건이고, 협상 재개하려는 것이 4건, 협상 준비를 위하여 공동연구 중인 것이 4건이다. 다국간 지역공동체와 타결된 FTA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FTA가 발효된 것이 적용되는 국가의 수는 대략 50개국, 협상이 타결된 국가를 포함하면 대략 55개국과 FTA 체결이 완료되었다.

143) 문준조 윌 보고서 93쪽.

144) 지역적 무역블럭은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주의는 그 자체 성격으로 볼 때 비참여국들에게는 차별적인 것이며 상호주의적인 무역상의 우대조치가 오직 참여국에게만 돌아간다는 점에서 WTO체제상의 자유무역 및 무차별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Sherrilyn S. Lim, "The U.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ostering Confidence and Commitment in Asia" Cal.W. Int'l L. J. Vol.34(2004), p.301. (문준조 윌 보고서 94쪽 각주 127 전재함)

145) 문준조 윌 보고서 94쪽.

146) 손태우, "WTO체제 내에서의 지역무역협정(RTA)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49권 2호), 부산대 법학연구소, 2009.2., 3쪽.

<표 4> FTA 추진현황

진행 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발 효 (11건)	칠 레	1999년 12월 협상 개시, 2003년 2월 서명, 2004년 4월 발효
	싱가포르	2004년 1월 협상 개시, 2005년 8월 서명, 2006년 3월 발효
	EFTA (4개국)	2005년 1월 협상 개시, 2005년 12월 서명, 2006년 9월 발효 (*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ASEAN (10개국)	2005년 2월 협상 개시, 2006년 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2007년 6월 발효, 2007년 11월 서비스협정 서명, 2009년 5월 발효, 2009년 6월 투자협정 서명, 2009년 9월 발효 (*ASEAN 10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인 도	2006년 3월 협상 개시, 2009년 8월 서명, 2010년 1월 발효
	E U (28개국)	2007년 5월 협상 출범, 2009년 7월 협상 실질 타결, 2009년 10월 15일 가서명, 2010년 10월 6일 서명, 2011년 7월 1일 잠정발효 (*EU 28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제 5 장 전자금융거래와 국경간거래

진행 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페 루	2009년 3월 협상 개시, 2010년 8월 협상 타결, 2010년 11월 15일 가서명, 2011년 3월 21일 서명, 2011년 8월 1일 발효
	미 국	2006년 6월 협상 개시, 2007년 6월 협정 서명, 2010년 12월 추가 협상 타결, 2011년 10월 22일 “한·미 FTA 이행법” 미 의회 상·하원 통과, 2011년 11월 22일 비준동의안 및 14개 부수법안 국 회 본회의 통과, 2012년 3월 15일 발효
	터 키 (기본협정· 상품무역 협정)	2008년 6월~2009년 5월 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2010년 4월~2012년 3월), 2012년 8월 1일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서명, 2012년 11월 22일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3년 5월 1일 발효
	호 주	2009년 5월 한-호주 FTA 협상개시 선언, 총 7차례 협상 개최(2009년 5월, 8월, 11월 / 2010년 3월, 5월 / 2013년 11월, 12월), 2013년 12월 4일 협상타결 선언, 2014년 2월 10일 가서명, 4월 8일 공식서명, 12월 2일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년 12월 12일 발효
	캐나다	2005년 7월 협상개시 선언, 총 14차례 협상 개최(2005년 7월, 9월, 11월 / 2006년 2월, 4월, 6월, 9월, 11월 / 2007년 1월, 4월, 10월, 11월 / 2008년 3월 / 2013년 11월), 2014년 3월 11일 협상 타결 선언, 6월 12일 가서명, 9월 23일 정식서명, 12월 2일 비준동의안 국회 본 회의 통과, 2015년 1월 1일 발효

진행 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타 결 (5건)	콜롬비아	2009년 3월~9월 민간공동연구, 총 6차례 공식협상 개최(2009년 12월 / 2010년 3월, 6월, 10월 / 2011년 10월 / 2012년 4월), 2012년 6월 25일 협상 타결 선언, 2012년 8월 31일 한-콜롬비아 FTA 가서명, 2013년 2월 21일 한-콜롬 비아 FTA 정식 서명
	터 키 (서비스· 투자협정)	2013년 8월~2014년 7월, 서비스·투자협정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 2014년 7월 서비스·투자협정 실질타결, 9월 가서명 2015년 2월 26일 서비스 투자협정 정식서명
	중 국	2007년 3월~2010년 5월 산관학 공동연구 이후 민감 분야 처리를 위한 실무협외, 2012년 5월 2일 협상개시 선언, 총 14차례 협상 개최 (2012년 5월, 7월, 8월, 10월 / 2013년 4월, 7월, 9월, 11월 / 2014년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2014.11.10 협상 타결 선언, 2015.2.25 가서명, 2015.6.1 정식서명
	뉴질랜드	2007년 2월~2008년 3월 민간공동연구, 총 4차례 공 식협상 개최(2009년 6월~2010년 5월)후 잠정중단, 2013년 12월 3일 공식협상 개시 선언, 총 5차례 협상 개최(2014년 2월, 3월, 6월, 8월, 10월) 2014.11.15 협상 타결 선언, 2014.12.11 가서명, 2015.3.23 정식서명
	베트남	2011년 11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2012년 8월 6일 협상개시 선언, 총 9차례 협상 개최 (2012년 9월 / 2013년 5월, 10월 / 2014년 3월, 5월, 7~8월, 9~10월, 11월, 12월), 2014.12.10 협상 타결 선언, 2015.03.28 가서명, 2015.05.05 정식서명

제 5 장 전자금융거래와 국경간거래

진행 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협상 진행 (3건)	한·중·일	2003년~2009년 민간공동연구, 2010년 5월~2011년 12월 산관학 공동연구, 2012년 5월 3국 정상회의시 “연내 협상개시 목표” 합의, 2012년 11월 20일 협상개시 선언, 총 8차례 협상 개최(2013년 3월, 7월~8월, 11월 / 2014년 3월, 9월, 11월 / 2015년 4월, 7월)
	RCEP	2011년 11월 ASEAN이 RCEP 작업계획 제시, 2012년 11월 2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협상개시 선언, 총 9차례 협상 개최(2013년 5월, 9월 / 2014년 1월, 3~4월, 6월, 12월 / 2015년 2월, 6월, 8월) (*RCEP: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ASEAN)
	중미 (6개국)	2010년 10월 공동연구 개시, 2011년 4월 공동연구 보고서 완료. 2015년 6월 한중미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2015년 7월 한중미FTA 예비협약 (*중미 6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나카라과)
협상 재개, 여건 조성 (4건)	인도네시아	2011년 10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2012년 3월 28일 한·인니 CEPA 협상개시 선언, 총 7차례 협상 개최(2012년 7월, 12월 / 2013년 5월, 7월, 9월, 11월 / 2014년 2월)
	일본	2003년 12월 협상개시, 2004년 11월 6차 협상 후 중단, 2008년~2012년 협상 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협의 총 9차례 개최
	멕시코	2007년 12월 기존의 SECA를 FTA로 격상하여 협상 재개, 2008년 6월 제2차 협상 개최 후 중단

진행 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GCC (6개국)	2008년 7월 협상 개시, 2009년 7월 제3차 협상 개최 후 중단 (*GCC 6개국: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협상 준비, 공동 연구 (4건)	MERCOSUR (5개국)	2005년 5월~2006년 12월 정부간 공동연구 완료 (2007년 10월 연구보고서 채택) (*MERCOSUR 5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이스라엘	2009년 8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2010년 8월 완료
	말레이시아	2011년 5월 한·말레이시아 FTA 타당성연구 개시, 2012년 12월 타당성연구 완료
	에콰도르 TA	2012년 4월 통상교섭본부장 에콰도르 통상차관 면담 계기, 타당성연구 진행 합의 2012년 9월~2013년 6월 민간공동연구 실시 2015년 2월 한·에콰도르 TA 추진가능성 검토 회의 2015년 4월 한·에콰도르 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위 표 출처 : [http://www.ftahub.go.kr/main/situation/kfta/ov/\(2015.8.12. 최종방문\)](http://www.ftahub.go.kr/main/situation/kfta/ov/(2015.8.12. 최종방문))

필자는 한국의 경우 무역확대 정책이 유익하지 않고, 내수 확대 정책이 건강한 국민경제 확립에 유익하며, 내수 확대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등 입장을 지속¹⁴⁷⁾하여 왔지만, 본 보고서 내용과는 무관하므로 생략한다.

아무튼 대외교역규모가 GDP대비 100%에 이르는 상황에서 한국은 계속하여 FTA 체결을 하여 왔다.

147) 성승제, “경제위기 분석과 상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한국법정책학회』 (12집 4호), 2012.에서 이를 처음 분석하고 그 이후 문헌마다 조금씩 내용을 달리하면서 계속 제기함.

제 2 절 FTA와 금융서비스

1. 개방방식과 GATS의 서비스 공급유형

FTA에 의한 금융서비스 개방방식은 자유화 기재방식에 따라 크게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개방방식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개방방식(이하 NAFTA 개방방식)으로 대별할 수가 있다.¹⁴⁸⁾

GATS는 서비스의 공급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소개하면, 첫째, Mode 1은 국경간 거래(cross-border supply)로서 금융소비자가 국내에 있고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에 있는 유형, 둘째 mode 2는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로서 국내의 금융소비자가 외국의 영역으로 이동하여 그 외국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유형, 셋째 mode 3은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로서 외국 금융회사가 서비스 공급을 위해 국내에 자회사 또는 지점의 형태로 진입해서 국내의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유형으로서 자본의 이동을 수반하며, 넷째 mode 4는 자연인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로서 자연인이 외국으로 들어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¹⁴⁹⁾

2.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

이미 한국 금융시장의 개방 정도는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IMF와의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선진국 수준에 다다라서, ①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 투자가 전면 자유화되고 은행·증권 부문의 현지법인 설립 허용 등 상업적 주재(Mode3)와 관련된 규제는 대부분 폐지되었고, ② 금

148) 문준조 윌 보고서 105쪽.

149) 문준조 윌 보고서 103~104쪽.

용서비스의 해외 소비(mode 2)도 허용되었으며, ③ 해상보험업은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mode 1)까지 허용되고, ④ 신용정보·평가업, 투자자문업 등도 국경간 거래(mode 1)가 허용될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개방된 상태이지만, 은행의 예대업무·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보험중개업 등은 국경간 거래(mode 1)나 해외소비(mode 2) 형태로는 공급되지 않는 등의 제한은 남아 있다.¹⁵⁰⁾

제 3 절 FTA와 전자금융법제

1. 문제의 소재

한 때 한국의 IT 기반이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자평이 많이 있었으나 그것은 하드웨어 측면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드러난지 오래일 뿐 아니라 그러한 우위도 최근 허상일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IT 기반이 아파트 등 단순히 주거밀집 지역이 많아서 인터넷망이나 이용기반을 조성하는데 유리할 뿐이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휴대폰 등 제조 및 판매 역량도 취약해진 것이 제조업체 판매량을 통해서 보이고 있다. 나아가 IT 기술을 접목한 자본시장 기법에서는 클라우드 펀딩을 활성화 하는데도 힘겨운 상황이고 소위 간편결제 등 최근의 이슈를 중심으로 한 핀테크 영역에서도 논의만 무성하고 활성화 등 업그레이드된 전자금융거래 기반을 조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선진국과의 FTA에서 서로 합의한 한도내에서 상대 국가에 지사 또는 지점을 설립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금융의 범세계적 자유화는 경우에 따라서는 선진국의 금융회사들이 국내에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동남아

150) 김자봉/하준경/이석호/구정환, 『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한국금융연구원, 2007.2., 3쪽.

금융허브 조성이라는 목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¹⁵¹⁾

한·미 FTA협정과 한·EU FTA협정은 그 내용으로서 신금융서비스의 허용,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 허용,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처리의 개방, 금융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성이 높은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¹⁵²⁾

2. 전자금융서비스 법제 개선

(1) 공정한 경쟁의 확보

디지털 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금융과 통신의 융합 현상이 진전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금융기관 고유 업무로 인식되었던 영역에서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전자금융업을 단순히 전달채널만 달리한 금융업의 일부로 이해하여 금융회사만이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¹⁵³⁾

통신회사 등 비금융회사들이 전자지급결제 분야에 진출하였고 금융회사들과 IT업체들과 전자금융거래 관련 업무제휴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종래와 같이 민법, 상법 기본법 규율체계로서는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체계화 또는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바 있고, 이에 따라 2006년 4월 28일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었다.¹⁵⁴⁾ 전자금융은 기술적 특징으로 인하여 금융정보의 위·변조나 전산장애에 따른

151) 문준조 윌 보고서 153쪽.

152) 문준조 윌 보고서 154쪽.

153) 문준조 윌 보고서 154쪽.

154) 강준모, “전자금융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법 규제내용과 개선방안”, 『우리나라 FTA와 전자금융법제』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0.10.27., 12쪽.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불명확하거나 현재 규범체계에서는 해석상 책임입증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에게 전가되어 있어 이용자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었다.¹⁵⁵⁾ 非금융회사들이 주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금융회사들과 非금융회사간 경쟁이 나타날 수 있는 바,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에 대하여 차별적인 규제 또는 법제도에 의한 불공정경쟁조건이 형성되지 않도록 공정경쟁이 보장되는 전자금융 규제가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¹⁵⁶⁾

(2) 규제체제 확립

규제의 공백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개념규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법의 규율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금융의 발전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금융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며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¹⁵⁷⁾

3. 한미 FTA 쟁점

(1) 개 관

한·미 FTA는 제13장에서 금융서비스를 규정한다. 제13.1조는 적용범위로서

제13.1조 적용범위
제13.2조 내국민대우
제13.3조 최혜국대우

155) 강준모 윌 자료집 13쪽, 이것은 2010년 문헌으로 올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선되었다.

156) 문준조 윌 보고서 155쪽.

157) 문준조 윌 보고서 155쪽.

제13.4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제13.5조 국경간 무역

제13.5조 국경간 무역

1. 각 당사국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부속서 13-가 158) 에 명시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소재한 인, 그리고 소재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의무는 당사국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영업 또는 구매권유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각 당사국은 이 의무의 목적상 “영업” 및 “구매권유”를 정의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의는 제1항과 불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당사국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158) 『부속서 13-가 국경간 무역』의 내용이다.

미합중국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제13.5조 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3.20조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 2)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그리고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라 호에 언급된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대로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2. 제13.5조 제1항은 보험서비스에 관하여 제13.20조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다호에 정의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3. 제13.5조 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가.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 정의의 거호에 언급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 제13.7조 일정 정보의 취급
- 제13.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 제13.9조 비합치 조치
- 제13.10조 예외
- 제13.11조 투명성

- 나. 중개를 제외한,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 정의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 대한민국
-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4. 제13.5조 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3.20조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 2)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 다. 상담·위험평가·계리·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 라. 제13.20조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인과 같이, 이 항의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의 보험 중개
5. 제13.5조제1항은 상담·계리·위험평가·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부수 서비스에 대하여 제13.20조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다호에 정의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 은행 및 그 밖의 보험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6. 제13.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 가. 금융 정보의 제공 및 이전
- 나.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련한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 다. 중개를 제외한,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이 약속은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증권과 관련한,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펀드사무관리,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이 약속은 (1) 대한민국 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2) 대한민국 내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대부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신용조회 및 조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일단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제13.12조 자율규제기구
제13.13조 지급 및 청산 제도
제13.14조 인정
제13.15조 구체적 약속
제13.16조 금융서비스위원회
제13.17조 협의
제13.18조 분쟁해결
제13.19조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2) 신금융서비스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3.6조 신금융서비스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13.4조나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이 금융기관에게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인가를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한편 위 조항에 대한 주석으로 제2번 각주는, “제13.6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어떠한 당사국의 영역에서도 공급되지 아니하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인가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다. 그러한 신청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당사국의 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3.6조의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

(3) 정 의

제13.20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그러한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이라 함은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또는 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그러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의 투자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금융기관이라 함은 그 기관이 소재하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을 하도록 인가되고 규제되거나 감독되는 모든 금융 중개업자 또는 그 밖의 기업을 말한다.
-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지사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배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금융서비스라 함은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과 보험 관련 서비스, 그리고 모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 가.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한다)
 - 1) 생명보험
 - 2) 손해보험

-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 다.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 라. 상담·계리·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은행 및 다른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 마.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 바. 소비자대출·주택담보대출·팩토링 및 상업거래 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 사. 금융리스
 - 아. 신용·선불·직불 카드·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 자. 보증 및 약정
 - 차. 거래소 및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
 - 1) 화폐시장 상품(수표·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 2) 외환
 - 3)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 4) 스왑·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 5) 양도성 증권
 -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 카.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 (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 타. 자금중개업
 - 파.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모든 유형의 집합투자운용·연금기금 운용·보관·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운용
 - 하. 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 거.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 너.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마호 내지 거호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 금융감독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 투자라 함은 제11.28조(정의)에 정의된 “투자”를 말한다. 다만, 그 조에 언급된 “대부” 및 “채무증서”에 대하여는 다음을 말한다.
 - 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는 그 기관이 소재하는 영역의 당사국에 의하여 규제 자본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투자이다. 그리고
 - 나. 가호에 언급된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이외에,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부 또는 금융기관의 소유하는 채무증서는 투자가 아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이외에,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대부 또는 소유하는 채무증서는 그러한 대부 또는 채무증서가 제11.28조(정의)에 규정된 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11장(투자)의 목적상 투자이다.
- 당사국의 투자자라 함은 다른 쪽 당사자국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당사국이나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전적으로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 본다.
- 신금융서비스라 함은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제공되지 아니하나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는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를 말하며, 금융서비스의 모든 새로운 형태의 제공방법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판매를 포함한다.
- 당사국의 인이라 함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당사국의 인을 말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 기업의 지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이거나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말한다. 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이거나 금융규제 기능을 수행하고 당사국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모든 금융기관, 제16장(경쟁 관련 사안)의 목적상, 지정 독점 또는 공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 자율규제기구라 함은 유가증권 또는 선물 거래소나 그 시장, 청산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협회를 포함하여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의 법령 또는 위임에 의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비정부 기관을 말한다. 자율규제기구는, 제16장(경쟁 관련 사안)의 목적상, 지정 독점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6 장 금융보안 정책방향

신기술기반에 의한 전자금융이 확산되고 있다. 그것은 IT 기술이 급진전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효율성과 편의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그 반면 안전성이 의문시되는 즉 각종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하여 개인정보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들을 점검 및 검토하고 그것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I. 전자금융거래법과 안전성 제고방향

최근 간편결제 등이 확산되는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가 정책 당국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한국은 그동안 IT기반이 선진적으로 구축되었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그것은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이 많아서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을 까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급속히 사용자가 확산되었을 뿐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핀테크 등 새로운 전자금융 산업의 육성으로는 연결되지 아니하였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확산되면서,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힘든 토양도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등록제도 등 개인인증 제도가 통일적이고 획일적으로 시행되어온 통제적인 법제도도 한 몫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살펴보았지만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한국처럼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주민등록제도는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획일성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목표로 하면서 쉽게 한국사회에 뿌리 내렸다.¹⁵⁹⁾ “1960년에서 1990년 사이 농경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의

159) 경로단축적인 기록적 경제성장 속에서, 서울시장(1966.3.~1970.4.) 재직시 김현옥씨(1926.10.27.~1997.1.9., 육사3기, 부산시장·서울시장·내무부장관 역임)가, 문화재

빠른 전환, 군대신 선전구호, 독재정권에 의한 외향적 경제성장 등은 한국적 모델을 특징짓는다¹⁶⁰⁾”, “한국에서 대기업은 정부와 사기업 간의 이익의 조화가 이루어 낸 산물¹⁶¹⁾” 등의 표현이 나타나게 한다.

이는 한국에서 시장구조가 꾸준히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변화한 것을 보면 충분히 타당성 있는 표현이다.¹⁶²⁾ 국가경쟁력 개념의 선구자이자 발전시킨 주역인 마이클 포터가 그 저서에서 한국경제에게 제안한 10개 아젠다의 주요 또는 대부분 내용이 경제력집중완화와 강력한 반독점법시행을 제안한 점¹⁶³⁾을 보더라도 같다. 이 보고서 각주 7에서 소개한 것처럼 한국은 OECD 중 기업소득이 제일 높고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이다. 이 점에서 시장의 작동원리가 기업 특히 대기업 시각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파괴 우려에 대하여 하였다는 발언을 소개한다.

“나는 지금 100미터를 달리고 있다. 오직 속도만이 나의 무기다. 격려도 비판도 생각할 시간이 없다. 끝까지 도착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Jung, In-Ha, 1997, “L’aménagement de Youido: modèle de l’urbanisme moderniste de Séoul?” *Revue de Corée* Vol. 29. No. 2., 32p. (발레리 줄레조 저/ 김혜연 역, 『아파트 공화국』, 후마니타스, 2014.10.21., 1판 10쇄, 101쪽 재인용).

160) 발레리 줄레조 윌 책 102쪽.

161) Amsden, Alice,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136(발레리 줄레조 윌 책 103쪽).

162) 구체는 성승제, 『시장구조개선에 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참조.

163) 성승제, 『법제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5., 19쪽.

마이클 포터가 그 저서(마이클 포터 저/문희창 역, 『마이클 포터의 국가 경쟁우위』, 21세기북스, 2009.2., 939쪽 이하)에서 한국경제에 제안한 10대 아젠다의 내용은, 같은 보고서에서 28~30쪽에 요약되어 있다. ① ‘고급요소에의 투자’ 제목, ② ‘업그레이드에 대한 압력’ 제목하에 임금상승과 원화절상(=환율하락), ③ ‘효율적인 자본시장’ 제목하에 대규모재벌에 대한 대출보조 등 대부분의 투자자본을 감독하는 것 비판, ④ ‘수요 측면의 우위’ 제목하에 내수시장 확대, ⑤ ‘클러스터의 심화’ 제목하에 완전히 독립된 중소기업, ⑥ ‘경쟁적 전략의 재설정’ 제목, ⑦ ‘다각화의 패턴’ 제목하에 재벌들의 문어발 확장 비판, ⑧ ‘경제의 분산’ 제목하에 경제력집중도 완화, ⑨ ‘국내경쟁’ 제목하에 강력한 반독점법 제정, ⑩ ‘정부역할의 변화’ 제목하에 재벌의존 발전·보호주의·정부결정을 통한 자본배분은 초기단계에는 적절하지 만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등 대부분이 경제력집중완화를 촉구한 내용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보건대 핀테크 등 전자금융거래업종의 육성과 같은 효과를 누리려면, 개인정보에 대하여 안전한 전자금융거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정책당국은 두가지 목적을 우선 실행하고자 한다. 가령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주요 선진국 법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금융감독당국의 무규제 원칙 또는 사후규제 원칙의 도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신기술 전자금융의 다양한 시도가 시장에서 테스트되고 확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로 사전규제 최소화 정책에 해당할 것이다. 예컨대 새로운 유형의 전자금융 서비스가 시장에서 출현하고 나타나는 것을 방조 또는 조장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거론 되는 것은 금융당국의 전지적 금융감독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가령 보안성심의 제도의 폐지를 들 수 있다. 이는 금융회사들 스스로의 자율적 기술 검토와 스스로의 취약점 분석과 평가를 우선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 요컨대 기술중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제도 폐지도 시도되는 등 각종 사후규제 강화를 통하여 전지적 금융감독을 위한 사전규제 입장에서 물러서고 있다.

필자는 이 경우 개인정보유출사고 유발 기업들에 대한 책임의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II. 인증방법 검증에 대한 기술중립성 제고

금융감독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정비 등을 통하여 인증방법에 대하여 기술적중립성 원칙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사전규제원칙을 일정부분 완화하고 사후규제 원칙으로 이행하는 것이 주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를 통하여 접근매체로 법상 정의되는 항목 중에 생체 정보 등도 포함하는 등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생체정보와 같은 특정 기술을

법상 기재한 것도 어느 정도 기술중립성 원칙에서는 벗어난 측면도 있다 할 것이다. 법상으로는 인증방법을 완화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시다발하도록 조장하는 것을 요한다.

그런 관점에서는, 새로운 인증방법에 대해서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담보할 것을 주된 인증요건으로 현재 두고 있다. 공인인증서를 강제로 사용하는 것을 폐지한 것이고, 공인인증서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개방화 또는 사후규제 원칙으로의 전환을 하는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공인인증서에 대한 규율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점 새로운 인증방법 등장에 일정한 한계를 줄 수도 있다.

한편 법률상 ‘생체정보’를 접근매체의 하나로 나열한 것은 조금 더 연구가 진행되어 보아야 하겠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본다. 생체정보란 것은 한 번 복제되면 평생 변경이 불가능하다. 주민등록제도와 같은 획일적·통일적 제도가 위험한 이유는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제도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이 중앙집중 관리되거나 하여 손쉽게 대량 정보유출사고로도 연결되는 때문이다. 주민등록제도도 변경이 매우 어려운데, 생체정보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과학기술의 전개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위험한 인증수단이 될 수도 있다. 살펴 본 것처럼 주요 선진국의 본인인증수단을 본 받아 조금 더 연성(쉽게 바꿀 수 있거나) 조금 더 선택가능한 폭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Ⅲ. 전자금융 안전성과 전자금융업 육성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와 관련한 판결(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 86489 판결)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여 본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피싱 또는 파밍에 의하여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침탈자에게

알려준 피해자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이다. 접근매체에 보안카드번호와 비번이 포함된다는 내용은 법상 접근매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그렇다면 금융회사의 소송수행능력에 의하여 판결이 일부 영향받았을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주의 환기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획일성, 통일성, 효율성이 강조된 결과 금융회사의 책임이 축소되어 보인 것일 수도 있다. 이 판결로부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어디까지로 범위를 설정하여야 할지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본인인증의 정확한 실행이 사회적으로 관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전자금융 안전성 제고는 결국 전자금융업 육성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2000년대 초반 뛰어난 IT 기반 확충은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 온 탓에 신기술 전자금융업 육성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다. IT기반이 확충되면서 사고가 증가하고 규모가 커졌다. 사고가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감독도 종래의 사전규제적 또는 금융감독 당국의 전지적 규제 시점도 변화할 기회를 놓쳤다. 그 중간에 이미 자본시장법 2008년 시행 등 변화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의 목적인 안전성과 전자금융업 육성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려면 기반이 되는 안전성이 우선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개인정보유출을 한 기업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과 같이 수행될 수 있다.

IV. 금융보안 법제도 검토

금융보안 정책방향은 우선 사전규제를 제한하고 완화하는 것에 초점이 놓여 있다. 그리하여 전자금융사고를 완전히 없애는 정책에서부터

관리하는 정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논의도 소개된다. 이는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논의라 할 것이다. 전자금융사고의 규모와 건수가 OECD 최고 수준일 터인데, 무슨 분석에 의하여 나타난 목표인지 알 수 없다. 질적인 보인인증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전체에 대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제도 추종적인 분위기, 그리고 효율성과 편의성만 추구하는 분위기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은행에서의 송금과 이체가 쉽고 빠르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일정 정도 무규제 원칙이 적용되면서 오히려 PayPal 등 지급대행업체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기술기준을 기술중립적으로 놓고 가는 것은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본인인증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새로운 신전자금융관련 기법들이 나타나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규제 원칙의 완화 및 사후규제 원칙 수용 또는 무규제 원칙으로의 한발 접근 등도 같은 목적을 갖는다.

최근 출범한 금융보안원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에서 기술적 수준보다 중요한 것은 특정 기관의 중립성 또는 독립성에 핵심이 있다. 기술적 수준은 우리 사회가 원한다면 길지 않은 시간 이내에 획득하고 달성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금융회사들의 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형태로 금융보안원이 출범한 것은 당초 이 기관의 목적이 달성되는데 조금 장애가 있게 할 수 있다. 요컨대 금융안전성은 금융소비자 보호와도 일정 부분 연결이 되는 때문이다. 그 점에서는 금융보안원의 재정적 독립성이나 기관 구성의 독립성들도 재검토될 필요를 일부 제기해본다.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경우 흔히 논의되는 것이 금융회사들의 책임 문제가 논의된다. 금융위원회 소관법령상 행정조치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필요하다. 가령 과징금과 과태료 같은 행정적 제재절차들이 추가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부처에서 운용되는 현행 행정적 제재절차들은 실질적으로 당국이 규제수단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대기업

들에게는 큰 타격이 되지 않는 금액만을 규정하는 것이 통상이다. 기업에 대한 책임은 민사책임의 엄정한 집행 등 다양한 제재수단도 동시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신기술에 의한 전자금융의 현황과 전개상태 등을 검토하고, 향후 법적 대응 방향에 대하여 장점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향후 신기술에 의한 전자금융 제도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개화하여, IT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이 보고서 주제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의 육성도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강원진·이병렬, “거액전자자금이체에서의 지급지시의 효력”, 『통상정보 연구』(Ⅲ권 1호)
- 강원진·이창숙, “전자지급거래에서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효력의 비교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7권 1호), 2007.3.
- 강우진 외 7인(금융보안연구원), 『전자금융거래 인증체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2013.10.15.
- 강준모, “전자금융거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21권 2호), 2005.8.
- 강준모, “전자금융 본인 인증방법 연혁 및 관련 금융보안 정책방향”, 본 과제를 위한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회의(2015.1.28.)
- 강준모, “전자금융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법 규제내용과 개선방안”, 『우리나라 FTA와 전자금융법제』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0.10.27.
- “전자금융환경의 거래서명 인증기술 동향 및 도입 시 고려사항“, 금융보안연구원, 2014년 제2호.
- 김자봉·하준경·이석호·구정한, 『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한국금융연구원, 2007.2.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결과(금융 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 참조. 2015.6.18.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보안원 설립 허가』, 2015.3.31.

참 고 문 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하락…』 2015.6.1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4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2014.10.1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결과(금융 IT 부문 자
율보안체계 확립방안)”, 2015.6.1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정보처리 위탁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보
도자료(2015.6.10.)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 - 』, 2014.3.10.일자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IT·금융융합 지원방안』, 2015.1.27.

김유미, “일본의 개인식별 및 본인인증제도의 현주소와 미래”, 『World
Inside 세상 속으로』(vol. 86), 2014.5/6.

김종현, “핀테크가 국내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KRX
Market』(2015년 여름호)

마이클 포터 저/문휘창 역, 『마이클 포터의 국가 경쟁우위』, 21세기 북스,
2009.2.

문병순, 『핀테크의 동향과 과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금
융과 IT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자료집, 2015.3.27.

문준조, 『FTA의 체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
연구원, 2010.10.29.

- 박배효,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의 개념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의의”,
본 과제를 위한 전문가회의(2015.1.28.) 3주제 발제문.
-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의 안전성 가이드라인
확정”, 2010.5.31.
- 발레리 줄레조 저/김혜연 역, 『아파트 공화국』, 후마니타스, 2014.10.21.,
1판 10쇄.
- 서희석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동 과제를
위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전자금융거래와 법적쟁점Ⅲ) 자료집』,
2015.10.12.
- 성승제, 『법제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5.
- 성승제, 『국내 중소기업금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입법조사처,
2013.10.
- 성승제, “경제위기 분석과 상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한국법정
책학회』(12집 4호), 2012.
- 성승제, 『시장구조개선에 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 소프트포럼 보도자료, “조흥은행, 국내 최초로 공인인증서 기반의 인터넷
뱅킹서비스 실시”, 2000.12.11.
-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2판)』, 2008.3.
- 손태우, “WTO체제 내에서의 지역무역협정(RTA)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49권 2호), 부산대 법학연구소, 2009.2.
- 송영관, “기술표준화, 정부개입, 그리고 공인인증서”, 『한국개발연구』
(37권 특별호 통권 제127호), 2015.3.

참고문헌

- 송홍선/장정모/한상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기자본 규제 of 국제적인 변화』, 자본시장연구원, 2012.12.
- 신용녀, “해외 금융권 바이오인식 사례 및 표준화 동향”,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2015.7.
- 심영규, “지역무역협정(RTAs)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법학연구』 (51권 1호), 부산대 법학연구소, 2010.8.
- 유재필 · 허세경, “해외 사례를 통해 알아본 핀테크 보안 이슈진단 및 보안 추진방향”, 정보과학회지, 2015.5.
- 이일호, “독일,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인증 및 개인식별”, 『World Inside 세상 속으로』, 2014.5/6.
- 이철송, 『회사법강의』(23판), 2015.3.
- 이충열, “우리나라 인터넷뱅킹의 특성과 성공 원인”, 2005.3.
-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07.3.
- 정신동, 『바젤3과 글로벌 금융규제의 개혁』, 선, 2011.
- 정준호 · 김정숙, “핀테크 서비스의 주요 사례와 보안 이슈”, 한국멀티미디어학회지 제19권 제1호, 2015.3.
- 주상룡 · 정문경, 『금융학원론』, 신론사, 2015.2.
- 최지현, 『핀테크와 정보보호』, 동 과제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전자금융거래법과 보안』, 2015.4.13.
- 최지현 · 김애진, 『ICT기업의 지급서비스업 진출 관련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957호, 국회입법조사처, 2015.3.13.

- 홍중현, 동 과제를 위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전자금융거래와 보안』, 4.13.) 3주제 발표문
- 황은진, “미국의 개인 식별 및 본인인증 방법”, 『World Inside 세상 속으로』(Vol. 86), 2014.5/6.
- 한국은행, 『전자금융총람』, 2009.5.
- 한국은행, 『전자금융총람』, 2015.2.
- 한세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보안 및 법적 도적 과제”, 융합보안 논문지 제15권 제2호, 2015.3.
- 한승우, “금융권 이상행위탐지기술(FDS) 이용 현황 및 전망”,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2015.7.
- 허세경, “핀테크 관련 보안기술 분석”,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2015.7.
- Charles P. Kindleberger, Robert Z. Aliber,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원제: Manias, Panics and Crashes: A History of Financial Crises), 굿모닝북스, 2006(김홍식 역).
- Amsden, Alice,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Banking EB (IT Examination HandBook), 2003.8., FFIEC
- Jung, In-Ha, 1997, “L'aménagement de Youido: modèle de l'urbanisme moderniste de Séoul?” Revue de Corée Vol. 29. No. 2
- Risk Management for Electronic Banking and Electronic Money Activities, 1998.3, BIS

참 고 문 헌

Sherrilyn S. Lim, “The U.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ostering Confidence and Commitment in Asia” Cal.W. Int'l L. J. Vol.34(2004)

http://www.huffingtonpost.kr/2015/10/05/story_n_8242158.html

www.kmfa.or.kr/paper/annual/2005/2-20.hwp

http://www.softforum.co.kr/05cyber/cy_sub02_01.asp?page=34&pkid=37&searchkey=&search=&isnotice=0

<http://www.ftahub.go.kr/main/situation/fta/term/>

[http://www.ftahub.go.kr/main/situation/kfta/ov/\(2015.8.12.\)](http://www.ftahub.go.kr/main/situation/kfta/ov/(2015.8.12.))

<http://gold.asiae.co.kr/view.htm?idxno=2015061117542337105>

<http://kr.wsj.com/posts/2015/07/07/%EC%A4%91%EA%B5%AD-%EC%A6%9D%EC%8B%9C%EB%8A%94-%EC%96%B4%EB%96%BB%EA%B2%8C-%EB%AC%B4%EB%84%88%EC%A1%8C%EB%8A%94%EA%B0%80/>

<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0035&newsid=20081206080204249&p=moneytoday>